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108-01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김 관 수 책임연구원
이 태 호 연 구 원
안 동 환 연 구 원
조 정 찬 연 구 원
임 채 환 연구보조원
허 민 정 연구보조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요 약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00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매년 신규 경영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총 169만 9,048개 경영체가 등록함. 해당 제도는 지자체 및 농업관련 기관 등에서 농업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등록 정보 구성)** 맞춤형 농정 추진 및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와 특정 농림사업 신청 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로 연계처리가 되는 구조로 구성
  · 농지 및 농작물 생산/직불금·보조금 신청,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추정 소득·자산·부채 등
- **(타기관 활용)** 등록 정보는 연계 솔루션 활용 방식(EAI)으로 전체 16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타기관 OPEN-API는 전체 2건, 전국 11개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활용
- **(식별번호 도입의 필요성)** 경영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인식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수령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대내외 연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개인이력 추적과 농정 반영의 필요성>

○ 농업경영주의 종사 형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도시 지역의 타산업 전환자가 많고, 겸업 비중도 높음.

○ 반면, 전라남도 등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전생애 종사자 수 및 전업농의 비중이 높음. 농업의 누적 유입률이 높을수록 겸업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

○ 향후 농정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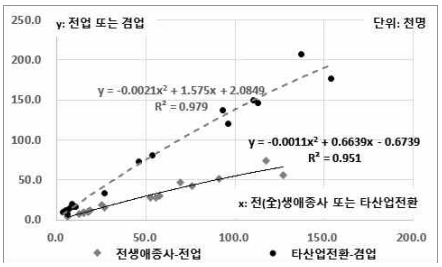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식별번호 생성 이론)** 새로운 번호체계 도입 검토를 위하여 식별번호가 가져야 할 이론 체계를 살펴봄.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분류에 적용되는 UCI(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와 이에 기반이 되는 인터넷 식별자 URN(URL의 확대판)을 참조

- **(상세 내용)** URN(Uniform Resource Names)은 유일성 · 영속성 · 확장성 · 융통성 · 규모성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성 · 유일성 · 변환성 · 상호운용성 등 총 9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됨. 본 연구의 시안 고려 시 상기 특성 중 영속성·확장성·유일성·포괄성 등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에 적용되어야 하는 특성을 적용

○ **(식별번호 생성 방법론)** 식별번호 생성방식의 방법론은 식별번호 분해 가능 수준에 따라 (1) 완전히 분해 가능한 식별번호, (2) 부분적으로 분해 가능한 식별번호, 그리고 (3) 분해 불가능한 식별번호 등 세 가지로 구분 가능

- **(유형 1)** 완전분해가능 식별번호는 각 자리에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식별체계를 의미(농업 분야: 농장식별번호 등)
- **(유형 2)** 부분분해가능 식별번호는 각 자리에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번호 역시 부여된 식별체계를 의미(농업분야: 현재 확인 불가, 타분야: 폴란드 개인 고유식별번호 PESEL)
- **(유형 3)** 분해 불가능한 식별번호는 어떤 자리에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제번호는 부여된 식별번호 체계를 의미(농업분야: 폴란드의 농업경영체번호 UIGR)

○ **(새로운 번호 체계 시안 제시)** 이론적, 방법론적,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하여 농업인번호 및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부여체계(안)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번호체계의 시안으로 총 3가지를 제안

- **(제1시안)** 농업 관련 농업인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고유번호를 분리하여 부여하는 방식(1-1시안이 파생 가능)

농업인:	8	6	-	가	나	3	5	9	0	-	0	0	1	X
	(1)			(2)	(3)			(4)				(5)		(6)
경영체:	0	4	-	4	9	5	9			-	거	거	0	0	1	X
	(7)					(8)					(9)	(10)		(11)		(12)

(1) 두자리 숫자(86): 신청자 출생년도 뒷자리 ex: 1986 ⇨ 86
(2) 한자리 문자(가): ‘ㄱ’ 내국인 남성, ‘ㄴ’ 내국인 여성, ‘ㄷ’ 외국인 남성, ‘ㄹ’ 외국인 여성
‘ㅏ’는 신청자의 출생 세기 ㅏ(20s), ㅓ(21s), ㅗ(22s), ㅜ(23s), ㅡ(24s), ㅣ(25s), ㅑ(26s), ㅕ(27s), ㅛ(28s), ㅠ(29s)
(3) 한자리 문자(나): (문자) 선착순 부여 선호 번호 포화 시 자음, 모음 순 변화(차→거)
* DB화 고려 자음 10개(ㄱ~ㅊ)로 제한(모음은 원래 10개) - 이하 동일 기준 적용[1]
(4)&(8) 네자리 숫자(3590)[2]:
- 행정 효율화 고려 시 지역 번호[3]를 부여(상세 설명은 각주 참고)
- 농업인 편의 고려 시 신청자 선호하는 번호 네자리(등록 기간 경과 후 난수 생성)
(5)&(11) 세자리 숫자(001): 선착순 부여, 일정수(999)를 상회하면 (4)에 받침을 넣어 해결
(6)&(12) 한자리 숫자(X): 유효 번호((1), (2), (4), (5)번 활용)

---

1) 자음을 10개로 한정시키면 DB 작성 시 숫자로 관리할 수 있음(각의 경우, ㄱ↔0&ㅏ↔0&ㄱ↔0 ⇨ 000). 그러나 고유번호를 숫자로 표기하면 번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논의점**: 지역번호 부여 방식으로 할 경우 정보 수록량은 많아지나 정보 안정성은 하락함. 농업인이 타읍면동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쟁이 될 수 있음. 반면, 선호번호 방식 채택 시 농업인 편의가 증가하고 번호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정보 수록량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음.
3)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는 4,107개 읍면동 지역에 분포해 있음(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 실제 읍면동 수와 차이 있음). 지역 구분 번호를 네자리로 부여할 수 있음(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0354, 인천시 중구 홍인동 0483). 부록에 우리나라 등기관서별 번호가 있으며 이 역시 참고 가능함.

(7) 두자리 숫자(04): 설립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신규 등록년도 뒷자리 ex: 2004 ⇨ 04
(9) 한자리 문자(거): (자음) 조직 형태, (모음) 신규 등록한 세기
ㄱ: 농업경영체, ㅂ: 농업회사법인, ㅇ: 영농조합법인, ㅋ: 기타(6종류 추가 설정 가능)
ㅏ(20s), ㅓ(21s), ㅗ(22s), ㅜ(23s), ㅡ(24s), ㅣ(25s), ㅑ(26s), ㅕ(27s), ㅛ(28s), ㅠ(29s)
(10) 한자리 문자(거): 등록하려는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업종 구분
ㄱ: 경종, ㅊ: 축산, ㅅ: 시설, ㄹ: 임업, ㅋ: 기타
업종의 상세 분류(협의 필요) ㅏ: 곡물, ㅓ: 과수 ; ㅏ: 돼지, ㅓ: 소 등

- **(제2시안)** 고유번호 뒤에 여러 특성화 정보를 수록하여 고유번호-특성화번호 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농업인: (1) (2) - (3) (4) (5) -

(6) (7) - (8) - (9) (10) - (11) (12) - …

영농 시작 연도(1) 및 당시 거주지(2), 작성년도(3)의 거주지(4), 실경작 면적(ha)(5), 업종 대분류(6) 생산 작물 상세 분류(7), 전년도 보조금 수령 여부(8), 종류 및 수령액(백만원)(9, 10), 11, 12 및 이하도 이와 같음.
※ 농업인번호에는 작물 생산량을 기록하지 않으며, 중복집계 방지를 위한 것임.

경영체: (1) (2) - (3) (4) - (5) (6)

- (7) (8) - (9) - (10) - … (…)

작성년도(1), 경영체 위치(2), 대표 생산 품목의 종류(3) 및 생산량(4), 주요 생산 품목1의 종류(5) 및 생산량(6), 주요 생산 품목2의 종류(7) 및 생산량(8), 대표자 및 개인번호(9) 대표자2 또는 소속원1의 개인번호 이하(…) 실제 소속원 수 대로 생성
※ 단체 특성화 번호는 제1시안 시행 기준으로 서술함.

- **(제3시안)** 어느 정도의 특성을 부여하여 고유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번호체계는 간소화한 시안임. <u>본 시안에는 등록년도, 경영체법인여부, 농업인지위,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를 반영</u>

지역 구분	시도	읍면동	지역 구분	시도	읍면동
0	서울특별시	354	5	전라남도	392
	인천광역시	129		광주광역시	192
1	경기도	512		제주특별자치도	74
2	부산광역시	165	6	전라북도	329
	울산광역시	78	7	충청남도	244
3	경상남도	346		대전광역시	171
4	경상북도	481		세종특별자치시	21
	대구광역시	180	8	충청북도	147
			9	강원도	292

농업인1: 8 6 2 0 - X X X X X
(1) 출생년 (2) 등록년 (3) 난수 또는 선착순[4)]

농업인2: 8 6 1 3 - X X X X X
(1) 출생년 (2) 성별 (3) 지위 (4) 난수 또는 선착순

경영체1: 7 0 2 0 - 1 X X X X X X
(1) 출생년 (2) 등록년 (3) 지위 (4) 난수 또는 선착순

경영체2: 7 0 1 - X X X X X X
(1) 출생년 혹은 등록 (2) 지위 (3) 난수 또는 선착순

※ **(준농업인)** 지위는 **경영주인** 농업인(=1), 경영주 외 농업인(=2), 준농업인(=3)을 구분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기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준농업인은 농산물 판매상, 유통인 등과 같이 농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경영체등록 기준이 되는 농지 면적,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미만 일정 수준을 충족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등임.**

※ **(개인정보 검토)** 개인정보 측면에서 검토하였을 때, 분해가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신청순서에 따른 부여가 3자리로 구성되는 등 생성체계의 인지로 인한 **번호 유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혹여 누출되어도 관련 정보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 **(새로운 식별체계 시안 제시)** 농업경영체번호 체계의 여러 모델의 조합 검토 결과, 세 가지 방안이 도출

- 첫째, 농업경영체번호는 현행을 유지하되 우선 농업인번호를 제3시안으로 도입
- 둘째,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모두 제3시안으로 도입
- 셋째,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모두 제1시안으로 도입

※ 시안별 세부 모델의 선택은 전문가 토론·합의, 농업인 의견 청취 등으로 결정

선호순	구분	장점	단점
1	**경영체 - 현행** **농업인 - 3안**	-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약	- 번호 중요성에 비해 체계 부족 - 심미성 부족
		- 높은 가독성 - 직관적임 - 농업인 지위 고려	- 기존 농업경영체번호와 비교하여 차별성 부족
2	**경영체 - 3안** **농업인 - 3안**	- 높은 가독성 - 농업인 지위 고려 - 영농시작년도 반영으로 농업인의 정체성 및 인지도 함양 가능	- 농업경영체 번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 높은 가독성 - 직관적임 - 농업인 지위 고려	- 기존 농업경영체번호와 비교하여 차별성 부족
3	**경영체 - 1안** **농업인 - 1안**	- 직관적임 - 농업인번호와 연계 - 등록년도, 업종 등 정보 반영	- 농업경영체 번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 가변요소 포함 - 한글 포함으로 전산상 처리 어려움 존재

4)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6자리로 조정 가능

		- 직관적임 - 농업경영체번호와 연계 - 출생년도, 외국인 여부, 성별 등 다양한 정보 반영	- 한글 포함으로 전산상 처리 어려움 존재

○ **(법률적 과제와 시행 로드맵)** 농업경영체 번호체계 변경 및 농업인번호 도입을 시행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실제 입법방향 및 고시안을 마련하고 시행 로드맵을 제시

- **(개인정보 관련 이슈)** 검토 결과, 농업인번호를 도입할 경우, 기본권(개인정보) 차원 내지 법률유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농업인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고유식별정보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을 피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 규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파악

- **(법률 입안 필요성)** 농정 관련 다른 법률에서 이 식별번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영체법에서 식별번호 도입 근거를 명시하여 다른 법률에서 식별번호의 도입 근거 조문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긴요

○ **(법률 시안)** 주민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작성 및 제안

<경영체법의 규정사항>

제6조의4(농어업인번호 등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이하 "농업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농어업인번호는 농업인번호와 어업인번호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농업인번호(어업인번호)는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특정될 경우 사용됨. 본 조문의 위치는 어민은 제외된 사항이란 점을 감안하여 농어업경영정보등록과 관련된 조문들의 맨 마지막에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되, 대통령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관리원장은 1급기관으로서 법률에서 인용 불가)에게 위임 가능(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주민등록번호 생성체계에서도 지역적 요소가 가미된 점 등에 비추어 시장 군수가 부여해도 되지만, 농업인번호는 전국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실제 집행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제6조의5(농어업경영정보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 · 가공할 수 있다.

※ 해설 : 현행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을 법률로 격상/ 개인정보의 분석 가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함은 체계정합성 위배(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는 포괄위임만 두었는데 이러한 분석 가공은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가능

제6조의6(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해설 : 시행규칙 제5조를 법률로 격상/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둠이 바람직함/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체계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법률 격상이 필요함.

<경영체법 시행령 규정사항>

제3조의2(농어업인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농업인번호는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따로 부여하되, 1인 또는 1 법인 · 단체별로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 · 단체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번호를 부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인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해설 : 개인 단체별 별도 부여 원칙과 1인(단체) 1번호 원칙 및 번호의 중복 재사용 방지를 규정(중복 재사용은 사후관리에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명시)/관리대장 등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하므로 부령에 재위임/전산적 방식에 의한 부여 허용(중복체크 등)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신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3의4. 법 제6조의4에 따른 농업인번호의 부여

<경영체법 시행규칙 규정사항>

현행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7조의2(농어업인번호의 관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인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농업인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번호 부여의 규범적·법리적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의 반영
1) 번호 생성 및 등록 방식에 관한 원리 : 등록은 현행 경영체법에 따르되, 번호 부여를 법령에 명시하고 번호 생성방법은 하위 고시에 반영
2) 번호 생성 및 등록 대상에 관한 범위 및 한계 : 번호 생성에 필요한 사항이 경영체법상 등록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보충(농업법인의 경우 세부품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등록사항으로 해결 가능)
3) 등록 과정 시 필요한 양식 : 번호생성체계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출생연도 등)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신청서 기재사항에 반영(현행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4) 불법 접근에 대한 보호 : 번호생성체계에서 등록신청자가 원하는 임의의 숫자가 3개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법 접근은 사실상 봉쇄 가능/시스템 자체에 접근하는 것은 IT 기술상의 문제이지만 하위 고시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를 제고
5) 수집 정보의 범위 : 생성체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통하여 수집(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 등의 기재사항으로 해결)
6) 번호 기록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에서 별도 대장 관리 의무 규정
7) 등록 시 정보 접근에 관한 규정 : 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는 별도 고려 불필요

- 농업인번호를 고유식별정보의 범주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일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1절의 각 조문에서 적용예외로 인정되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경영체법에서 일괄하여 마련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법 제6조의4항에 추가 방안을 고려해야 함. 추가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농식품부 업무에 활용되는 범위를 특정해줄 수 있음.

<신설>

제6조의4(농어업인번호 등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농업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1. 관련 농업정책자료의 연계 및 분석
2.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3.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③ 농업인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 로드맵)** 작성된 법령은 다음과 같은 입법 추진 로드맵을 통하여 진행되며,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상세 순서는 다음과 같음.

- **경영체법(법률):**
  · 정부제안의 경우 : 초안 작성(완료)-부처 협의(2주-1개월)-입법예고(40일)-규제심사(통상 6주)-법제처 심사(3주)-차관회의(1주)-국무회의(1주)-대통령 결재(1주)-국회 의안과 접수(1일)-국회 상임위 회부(여야 협의 등 국회 일정에 따름)-전문위원 검토(2주 : 주무부처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시 단축 가능)-소위 회부(국회 일정)-상임위 의결(국회 일정)-법사위 회부(국회 일정)-전문위원 검토(통상 1주)-소위 회부(국회 일정)-법사위 의결(국회 일정)-본회의 회부(국회 일정)-본회의 의결(국회 일정)-정부 이송(통상 1주 : 의안과 최종 자구 검토기간)-국무회의 공포의결(1주-2주)-공포(관보 게재)
  · 의원제안의 경우 : 초안 작성(완료)-발의 국회의원 섭외(1주)-국회 의안과 접수(1일)-이하 정부제안과 동일
- **경영체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률 공포 후 일정 시작.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경영체법 부칙에서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상 설정
  · 초안 작성(완료)-부처 협의(2주-1개월)-입법예고(40일)-규제심사(통상 6주이지만 형식적 심사시 1주 정도로 단축 가능)-법제처 심사(3주)-차관회의(1주)-국무회의(1주)-대통령 결재(1주)-공포(관보 게재)
- **경영체법 시행규칙(부령)**[5]:
  · 법률 공포 후 시행령과 동시 추진 가능(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있지

5) 시행규칙과 고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함.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고시는 사전절차가 없으므로 시행규칙 공포에 맞추어 발령하면 될 것으로 보임.

만 동시 추진 가능/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야 함)

· 초안 작성(완료)-입법예고(40일)-규제심사(통상 6주이지만 형식적 심사시 1주 정도로 단축 가능)-법제처 심사(3주)-공포(관보 게재)

- **농어업인번호 등 식별번호의 체계 및 부여 등에 관한 고시:**

· 법률 시행일 전까지 발령이 이루어져야 함

· 초안 작성(완료)-규제심사-(통상 6주이지만 형식적 심사 시 1주 정도로 단축 가능)-발령-법제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 **(도입시 유의 사항)** 농업경영체번호는 오랜 기간 여러 기관에서 전산화되어 활용되어 번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행정비용 지출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판단

- 직접비용(단순 번호 교체비용)[6]은 약 6,00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보조사업 DB의 번호 수정비용, 대외연계기관에서의 교체비용과 기존 정보와의 연계성 문제 등 유무형의 행정(파급)비용이 발생 가능

· 실무담당자도 농업경영체번호의 변경은 어려워 보이며 당장은 불필요 의견 제시

○ **(실질적 도입 방안)**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번호는 현행 유지하되, 농업인번호는 제3시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농업인번호 도입과 동시에 현행 농업경영체 번호를 바꾸는 것은 실무적 측면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정착에도 시간이 소요되어 농관원의 행정 추진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

- **(도입 대안)** 농업경영체번호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향후 농업인번호가 시행된 이후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농업경영체 번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

· 다만,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농업인번호를 수정 보완하는 것은 비교적 제약이 적고, 인력, 장비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모의 운용 등을 진행하여 추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

○ **(향후 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새로운 식별번호 체계 도입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

- **첫째,** <u>농업(인)과 관련된 내외적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번호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u>

·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농정은 맞춤형 농정이 시행하고, 2020년에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등 농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민 및 농업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주민등록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등의

6) 번호교체에 필요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참고 8에 첨부함.

변화 발생

· 그러나 과거 농업경영체 본격적인 도입 안을 마련하는데 까지 1~2년이 소요되었으며, 시행 이후 본격화까지 제도적·법률적 애로사항이 존재함. 현재 역시 법률적으로 보완 사항 존재

- **둘째,** 향후 농업인번호 도입의 추진은 법률적, 정책적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농업인과의 소통하는 등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식별번호체계의 형태와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파악 가능. 그러나 제도 참여자(수혜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확인·수렴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함. 이러한 부분은 추후 연구 진행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 정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기대 효과 ····· 2
4.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용동향

1. 농업경영체 시행 이력 ····· 5
2. 관련 기구의 역할 및 활용 동향 ····· 15
3.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현황 ····· 25
4. 시사점 ····· 33

제3장 식별번호 생성방법 및 사례

1. 식별번호 생성의 이론 및 방법론 검토 ····· 35
2. 국내외 농업관련 식별번호 유형별 사례 ····· 42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부여체계(안)

1. 검토배경 ····· 51
2.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제안 ····· 52
3. 발급번호부여 방안 ····· 64
4. 요약 및 소결 ····· 65

제5장 농업인번호 도입의 법적 과제

1. 현황 및 과제 ····· 68

2. 개인식별코드 구축의 법적 근거마련 ····· 69

3. 코드 구축방법에 관한 고시안 마련 ····· 84

제6장 요약 및 결론 ····· 88

<참고 문헌> ····· 92

<부록 1: 부표> ····· 94

<부록 2: 법률> ····· 104

표 목 차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용동향

표 2-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 ····· 6
표 2-2.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 여부 ····· 10
표 2-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11
표 2-4.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분류별 건수 ····· 12
표 2-5.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의 연도별·종결유형별 처리건수 ····· 13
표 2-6. 연계 솔루션 활용 방식(EAI) 연계 현황 ····· 16
표 2-7. 타기관 OPEN API 방식 연계 현황 ····· 17
표 2-8. 지방농정지원 OPEN API 방식 연계 현황 ····· 18
표 2-9. 농업경영체 DB 자료 제공내역 ····· 20
표 2-10. 2019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연계 지원사업 현황 ····· 21
표 2-11. 보조사업연계 사업 수 추이 ····· 21
표 2-12.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제공 현황 ····· 22
표 2-13. 농업인 운영 경영체와 경영주의 지역별·성별 분포(2019년) ····· 26
표 2-14. 농업경영주의 지역별·연령별 분포(2019년) ····· 27
표 2-15. 농업경영주의 종사 형태(2019년) ····· 28
표 2-16. 농업인 운영 경영체와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2019년, 농업 분야) ····· 30
표 2-17. 가축 및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지역별 분포(2019년) ····· 32

제3장 식별번호 생성방법 및 사례

표 3-1 IACS 구성요소 중 3가지 식별 대상의 식별체계 특징 ····· 44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부여체계(안)

표 4-1. 농업인번호 관리체계 및 현황 ····· 53
표 4-2.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번호 부여체계 장단점 ····· 57
표 4-3.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 정리 ····· 60
표 4-4.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 63
표 4-5. 준농업인 등록기준 ····· 64
표 4-6.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장단점 비교 ····· 67

제5장 농업인번호 도입의 법적 과제

표 5-1. 법률 신구조문 비교 ····· 82
표 5-2. 시행령 신구조문 비교 ····· 83
표 5-3. 시행규칙 신구조문 비교 ····· 84
표 5-4. 각 법령 종별 입법대상 ····· 85
표 5-5. 각 법령 종별 입법절차 ····· 86

그 림 목 차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용동향

그림 2-1. 현재 농업경영체번호 구성 방식 ····· 8
그림 2-2. 맞춤형 농정의 청사진 및 목표 ····· 11
그림 2-3.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 ····· 13
그림 2-4. 농정원의 농업인번호 추진에 관한 구상 ····· 14
그림 2-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 19
그림 2-6. 공문으로 농업경영체 DB 요청 시 정보 획득경로 ····· 20
그림 2-7. 농업인 운영 경영체(좌)와 농업법인(우)의 지역별 분포도(2019년) ····· 26
그림 2-8. 농업경영주의 전생애종사 및 타산업 전환자와 전겸업 수의 상관관계(2019년) · 29
그림 2-9. 농업인 운영 경영체(좌)와 농업법인(우)의 지역별 경작 면적(2019년) ····· 31
그림 2-10. 가축 사육(좌)과 곤충 사양(우) 마리 수의 지역별 규모(2019년) ····· 33

제3장 식별번호 생성방법 및 사례

그림 3-1. VIN의 번호 구성 체계 ····· 37
그림 3-2. HSK의 번호 구성 체계 ····· 38
그림 3-3. 농장식별번호 구성 체계 ····· 38
그림 3-4.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구성 체계 ····· 39
그림 3-5. 우리나라의 차량 번호판 구성체계 ····· 39
그림 3-6. PESEL의 번호 구성 체계 ····· 40
그림 3-7. PESEL의 연도별·월별 번호 부여 방식 ····· 40
그림 3-8. 주민등록번호의 번호 구성 체계 ····· 41

그림 3-9. 법인등록번호의 번호 구성 체계 ····· 41
그림 3-10. UIGR의 번호 구성 체계 및 통제번호 부여 방법 ····· 42
그림 3-11. ARMA의 번호 구성 체계 ····· 42
그림 3-12.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구성 체계 ····· 45
그림 3-13. 독일 토지식별번호 구성 체계 ····· 46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부여체계(안)

그림 4-1. 농업경영체등록번호(안) ····· 53
그림 4-2. 농업경영체번호(안)를 활용한 농업인번호(안) ····· 54
그림 4-3. 농업인번호 부여체계 ····· 55
그림 4-4.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기타 고유번호 부여체계 ····· 56
그림 4-5. 농업경영체 및 법인 소속원 번호 부여체계 ····· 58
그림 4-6. 개인 특성화 정보 부여체계 ····· 59
그림 4-7.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특성화 정보 부여체계 ····· 59
그림 4-8. 단순화된 농업인번호(연구진 선호 순서 순) ····· 61
그림 4-9. 단순화된 농업경영체번호 ····· 62

제5장 농업인번호 도입의 법적 과제

그림 5-1. 법률 및 시행령 소요 기간 ····· 86

부 록 목 차

부록 1: 부표

부표 1. 연차별 농업인번호 도입 대상 지원사업 목록(2017년 9월 5일 기준) ····· 94

부표 2. 법인등록번호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96

부표 3. 법인등록번호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99

부표 4.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교체비용 산출 ····· 101

부록 2: 법률

부록 1. 헌법상 법률로 규정할 것을 정한 조문 예시 (총강 및 기본권) ····· 102

부록 2. 우리나라 등록번호 입법례 및 번호부여 체계 ····· 104

부록 3. 주민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 115

부록 4. 경영체법상 관련 조문 ····· 11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식 체계는 농업경영체등록번호임.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상기 법 제16조, 제19조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농업경영체 관련 일반 현황(경영주 정보, 참여 농업인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재배(직불금·보조금 포함),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 규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현재 농업정책의 대상은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으로 나뉘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음.

- 2019년 현재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약 169.9만 개이며, 모든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영체등록정보는 농업인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는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의 본격 시행 이전에 테스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 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타법과의 관계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한편, 경영체등록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나, 개별 보조사업에서는 경영체 내 개인 농업인을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보조사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나, 개인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개별보조사업과 수령자 간의 매칭이 어려움.
-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실경작자 파악이나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자 상호교차 검증을 위한 기본식별 코드가 부재한 실정임.

-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는 향후 농업인별 보조금의 수령내역, 보조금 신청경향 등 다양하게 농업정책에 필요한 기초 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농업인번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와 경영체 내의 농업인 개개인을 연계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 농업인 인식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구성되어야 하는 형식, 구성 요소, 법률 기반 등을 사전적으로 연구해야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농업인 개인별 맞춤형 사업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의 구축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음.

- 현재 시행되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일련번호(10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향후 도입해야 하는 새로운 인식 체계(경영체별, 개인별)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맞춤형 농정의 시행, 개인정보 보호,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구상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의 개정안(경영체법 등)을 마련하고 유관 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며, 도입 시기 검토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인식체계(경영체별, 개인별)는 다음 3가지 기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 도입된 인식체계를 농업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기본식별 코드를 마련함으로써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실경작자를 파악하거나 보조금 신청자 중 부정수급자를 검증할 시 활용할 수 있음.
- 인식체계를 통해 농업인 개개인을 연계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별 보조금의 수령 내역, 신청 경향 등 농업정책에 필요한 기초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4.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1.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용동향, 제3장 식별번호 생성 방법 및 사례,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부여체계(안), 제5장 농업인번호 도입의 법적 과제,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임.

- 제2장에서는 현행 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이력 및 운용 동향, 관련기구의 역할 및 활용 사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등록자료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제3장에서는 우선 식별번호가 가져야 할 이론적 체계(특성)를 검토하고, 식별번호 생성 기법의 방법론적 검토를 시도하며, 식별번호 생성의 유형별 사례를 국내외 농업 관련 식별번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식별 번호 생성의 이론적 검토, 방법론적 검토 및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인번호 포함)에 대한 모델을 개발·제시하였음. 이때 정책 시행의 목적을 감안한 식별번호의 생성 방식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각종 현실 조건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1] 특히,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의 등록대상에 대한 범위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모델(준농업인 포함)을 제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농업경영체 체계 변경 및 농업인번호 구축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 반영 사항 및 조문을 구성하였음. 또한 대내외 농업인번호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여 농업인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제시하였음.
- 제6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도적·법률적 차원에서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농업인 식별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음.

4.2. 주요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문헌 연구(식별번호 생성 방법에 관한 이론 및 사례 검토), 조사 연구(심층 면담), 외부 전문가 활용/위탁 원고 의뢰 등의 방법을 종합적·다각적으로 활용하였음.

- 각종 식별번호의 생성 방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관련 식별번호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농업경영체번호 부여에 관한 규범적·법리적 조건을 개

1)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부여가 가능한 방식인지 여부, 기 등록된 경영체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방법 문제, 농업인번호의 경우 현행 농업경영체등록번호와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의 측면 고려 및 장단점 분석, 등록 년도, 지역(시도), 경영주 구분, 영농형태, 경영규모, 가족식별 등 등록번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의 장단점 분석, 농업인이 쉽게 이해・기억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농업인 측면의 장단점 분석

괄적으로 살펴보았음(관련 내용은 하단 참조).

· 본 연구진이 법률 관련 비전공자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제4장(관련법령 개정과 타 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은 숭실대 조정찬 교수(경제법 전공)에게 위탁 원고를 의뢰하여 본 연구 충실도의 향상을 도모하였음.

- 본 제도의 수행자 및 관리자는 농업인 및 유관 기관 담당자임을 고려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2]하여, 신규 제도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 및 번호 발급 주체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2) 초기 본 연구는 농업인식별번호와 관련된 전문가 5~6명(농업 실무자 포함 가능)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진행으로 개별 면담 또는 전화 인터뷰로 대체 추진하였음.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용동향

1. 농업경영체 시행 이력

○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4228호)이 제정되고, 이어 동년 8월에 시행령, 11월에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농업법인[3]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정사상 처음으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법인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90년 11월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최초[4]로 설립되었음.

○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농지 소유는 허용하지 않았음. 위탁영농회사 규정은 삭제되고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체 성격을 부여하였음.

- 1994년 농지법 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지법상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농지소유자격이 부여되었으며(단, 주식회사 제외), 농지법 상의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농업인의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이상이고, 대표자가 농업인이며,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으로 규정되었음.

○ 2002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회사 형태의 제한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형태를 인정하였음. 이때 농지법 상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총출자액 1/2이상, 대표자가 농업인, 업무집행권 1/2이상이 농업인 규정은 존치되었음.

- 200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총출자액 한도를 삭제하였음. 농지법 상의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 업무집행권 1/2이상이 농업인 규

---

3) 영농조합법인: 1ha 미만의 5년 이상 자경농가가 5인 이상이 모여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위탁영농회사: 농민의 위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지경영을 포괄적으로 수탁받아 영농을 대행하는 회사

4) 제1호 영농조합법인은 경남 김해군 진례면 "청천흥농사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는 김동광임(1990. 11.26. 설립 등기). 제1호 위탁영농회사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으로 대표는 민종규임(1990.11.02.).

정은 존치되었음.

-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대표자의 농업인 규정을 삭제하였음. 농지법 상의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존치되었음.

표 2-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990년 제정</th><th>1993년 개정</th><th>1994년 개정</th><th>1998년 개정</th><th>2009년 개정</th></tr>
<tr><td colspan="2">근거 법률</td><td colspan="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td><td>농업·농촌기본법</td><td>농어업경영체 육성법</td></tr>
<tr><td rowspan="6">영농조합법인</td><td>취지</td><td>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td><td>▪농업경영 합리화로 생산성 제고
▪농산물공동출하,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td><td colspan="3">▪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 제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td></tr>
<tr><td>농지</td><td>▪농지소유 가능
▪소유상한 규정 없음</td><td>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td><td colspan="3">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td></tr>
<tr><td>사업</td><td colspan="5">▪농수산업과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작업대행</td></tr>
<tr><td>주체</td><td>▪당해시·군 거주
▪3년 이상 영농
▪1ha 미만 농지소유자</td><td>▪유지
▪유지
▪소유상한 폐지</td><td colspan="3">▪거주지 요건 폐지
▪영농기간 요건 폐지
▪농업인·생산자단체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td></tr>
<tr><td>출자</td><td>▪농지와 현물에 한정
▪1인당 총출자액의 1/3이하</td><td>▪현금출자 가능
▪유지</td><td colspan="2">▪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td><td>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td></tr>
<tr><td>타법</td><td colspan="2">▪민법의 조합규정
▪무한책임</td><td colspan="2"></td><td>해산명령에 상법 176조 준용</td></tr>
<tr><td rowspan="6">농업회사법인</td><td>취지</td><td colspan="2">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td><td colspan="3">▪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 의 부가가치 제고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td></tr>
<tr><td>설립</td><td></td><td>설립등기 후 시장·군수에 통지</td><td>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통지</td><td colspan="2">폐지</td></tr>
<tr><td>농지 소유</td><td>불가능</td><td></td><td colspan="2">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농업인이 대표사원,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 가능</td><td>소유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 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농업인일 것)</td></tr>
<tr><td>사업</td><td>▪농업경영
▪농작업대행(농가당 위탁상한 3ha)</td><td>▪위탁상한 3ha폐지</td><td colspan="2">▪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부대사업</td></tr>
<tr><td>주체</td><td>농민</td><td>농민·생산자 단체·농지개량조합</td><td>비농업인 출자 가능</td><td colspan="2">농지개량조합 삭제</td></tr>
<tr><td>출자</td><td></td><td></td><td>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 이하</td><td>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4</td><td>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100</td></tr>
<tr><td>타법</td><td colspan="5">▪상법의 회사규정 ▪유한책임 ▪무한책임</td></tr>
</table>

자료: 김정호 외(2015)

○ 2004년 2월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소득안정계정'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을 제시하였음.

○ 2007년 농림부는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을 위하여 등록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6월), 동년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7.03.20.).

- 당시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음.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8.05.28.).

- 당시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었음. 그러나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었으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관원의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하도록 되었음.
- 이때 정부는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음.

○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영경영체등록제를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요 관련 연혁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등록제 본격 추진을 위한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농가 123만호의 68%인 약 83만호가 예비등록을 신청하였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02.02.).

- 당시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었음.
- 이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영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등록된 농가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통지서를 배부하였음.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여 관리되었음.

○ 2009년 4월 1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20호)이 공포되었으며, 6개월 뒤(10월 2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현지조사, 등록정보 수정·보완요청 등에 관한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위탁하고 있음.
- 시행 초기 농가들이 개인 정보를 등록할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농업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농가 참여가 활성화되었음.

그림 2-1. 현재 농업경영체번호 구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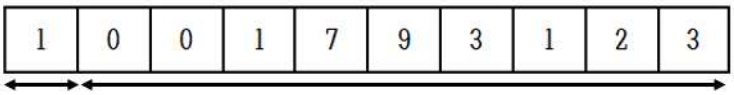

<경영체 유형> <등록순 번호>

자료: 필자 작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 · 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 심사 · 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9. 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9. 19.>

1.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개정 2015. 7. 6.]

○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신규 등록과 함께 변경 등록을 하는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였음.

- 2010년 말, 약 114만 개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으며, 2012년 말에는 약 149만 개가

등록함. 경영체 추가 등록이 증가한 배경에는 면세유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등록정보와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의 연계 및 스마트 농정의 지원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제 갱신을 실시하여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를 진행해오고 있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의 도상 연습을 실시하였음[5]. 도상연습 결과, 등록 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농업소득[6]으로 직불금을 지불하기에 추정 소득의 부정확성 문제가 있었음. 또한 축산, 과수 등 고소득 품목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음. 따라서 당시 수준에서는 등록제 내 각종 등록 정보를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음.
- 2013년에는 스마트 농정의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직불 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음.
- 이에 2014년에는 농업 맞춤형 농정 추진에 필요한 실질정보 위주로 등록정보를 확대하였고, 관련 정보의 일제 갱신이 실시되었음. 이렇게 갱신된 정보는 정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정부 3.0』과 농업인 맞춤형 농정에 활용되었음.
  · 이때 등록정보는 60개에서 93개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농가 인력구조, 농가소득별 유형, 농산물 생산·유통 정보 분석 등에 활용되어 과학적 맞춤형 지원 정책에 활용되었음. 또한 농업경영정보는 직불 사업의 통합 관리, 농림사업 대상자 자격 및 지원 규모 검증 등 정책 자금 집행의 근거로 이용되었음.
  · 2014년에 시행된 일제 정보 갱신은 농관원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방문 접수가 완료된 지역은 총 41,187개 마을(100%)/ 2,510개 읍·면이었으며, 당시 등록된 전체 농업경영체(151만 개) 가운데 147만 개의 정보가 갱신되었음.

○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8~10만 개의 농업경영체가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총 169만 9,048개 농업경영체가 등록하였음. 또한 일제 갱신을 통해 매년 80%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갱신함.

---

5) 1차: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9개 품목의 9개 시・군(9개 읍・면)의 4,420농가를 대상
2차: 19개 품목에 대해 19개 품목의 18개 시・군(44개 읍・면・동)의 1만 농가 대상
3차: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35개 품목의 25개 시・군(48개 읍・면・동)의 1만 농가 대상

6) 농촌진흥청 표준소득

표 2-2.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 여부

연도	농업경영체 (연말기준)	신규	갱신			미갱신
			합계	갱신	등록제외	
2015	1,601,621	103,478	1,298,069	1,194,591	57,066	303,552
2016	1,627,185	90,613	1,324,585	1,262,321	62,264	208,896
2017	1,657,244	84,263	1,346,702	1,286,152	60,550	280,887
2018	1,670,227	87,173	1,434,415	1,346,702	72,866	221,505
2019	1,699,048	87,814	1,392,656	1,331,734	60,922	273,0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2016년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계획"을 시행하였고, 경제주체(농민)에게 맞춤형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기존[7]의 정부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킨 것임.

- '맞춤형 농정'의 핵심은 경영체의 유형(특성)에 맞게 재정 사업을 재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업인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임.
- '맞춤형 농정' 시행의 전제 조건은 개별 농가와 지역 산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신속하게 파악되고 축적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부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맞춤형 농정' 실현의 필수적인 기초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계획"은 고령화, 세계화, 뉴노멀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존하는 각종 농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음.

- "계획"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시행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업경영체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지원을 맞으며 다양한 성장 경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0여만 농가를 대상으로 연령, 경력 등 농가의 특성과, 재배면적, 농업조수입 등 경영 특성을 기준으로 경영체를 유형화하여 전문농, 일반농, 창업농, 고령농 등으로 재분류 함. 또한 농업법인도 주요 사업분야 별로 생산전문, 체험·관광, 유통·수출, 가공형 등으로 유형화하였음.

7) 1994년 이후 2016년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하여 개별 재정사업을 시행하였음.

그림 2-2. 맞춤형 농정의 청사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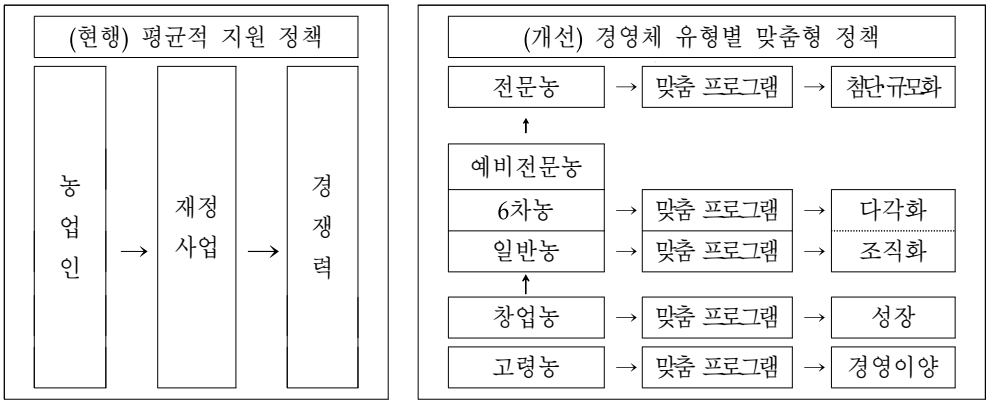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 등록정보는 맞춤형 농정 추진 및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와 특정 농림사업 신청 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로 연계처리가 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 등록 신청서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구분			등록 대상 정보
일반 현황	농업인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농이력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공동경영주 여부
	법인	법인현황	법인형태(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법인 주소(본점, 분점), 주요사업(생산, 가공, 유통 등)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출자규모	출자자 수, 출자액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외국인
농지 및 농작물 생산/직불금·보조금 신청	농지일반		농지소재지, 지목
	농지면적		실제 경작면적, 휴경, 폐경
	시설현황		시설종류, 시설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품목, 재배면적(노지, 신설)
	직불금·보조금 신청		신청사업명, 재배품목, 신청면적, 농지 이용현황, 신청인 성명, 진흥지역 여부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농지 소유자		농지 소유자
가축·곤충 사육시설	사육시설 현황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자영, 임차),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

및 사육규모	사육정보		사육품목, 사육규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농업인	생산유통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별 비율
	법인	가공판매	품목, 판매금액
추정 소득·자산 ·부채	법인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 농업선진국인 EU의 직불제를 살펴보면, 지불단가를 균등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기본직불제(BPS: Basic payment scheme)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급권(entitlement)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함. 수급권의 경우 농지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직불제는 개별 농업인을 단위로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농업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개인 단위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표 2-4.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당 분류별 건수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인정보 무단수집	2,442	2,568	1,876	2,764	3,237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3,585	3,141	3,881	6,457	6,055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77,598	48,557	63,189	111,483	134,271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57	855	862	1,149	1,292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60,480	38,239	30,972	37,156	8,745
기타	7,089	4,850	4,342	5,488	5,655
합계	152,151	98,210	105,122	164,497	159,255

자료: 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침해건수 상담건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66&board_cd=INDX_001> (검색일: 2020.05.08.)

○ 2019년도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총 15만 9,255건으로 2018년도(16만 4,497건) 대비 약 3% 감소함. 2018년도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총 16만 4,497건으로 2017년도(10만 5,122건) 대비 약 56% 증가함(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침해건수 상담건수).

- 2019년도 침해 사례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만 4,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으로 나타남.

- 2018년 침해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11만 1,4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으로 나타남.

그림 2-3.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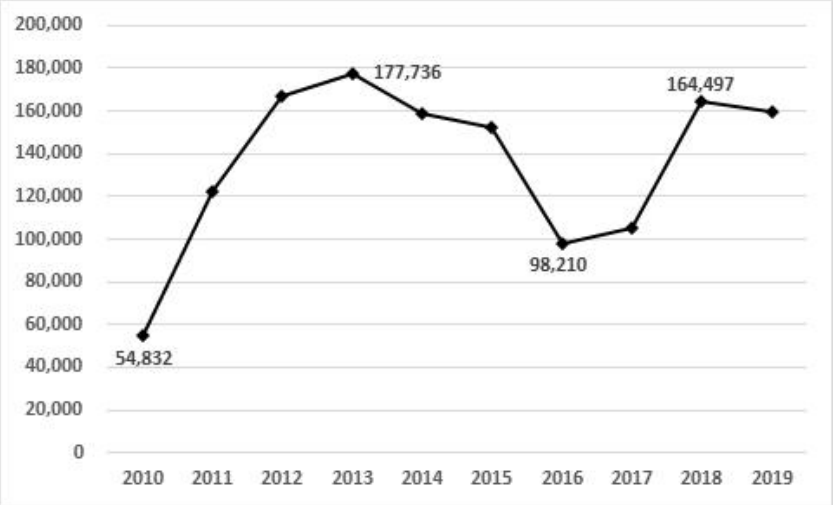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침해건수 상담건수<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66&board_cd=INDX_001> (검색일: 2020.05.08.)

표 2-5.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의 연도별·종결유형별 처리건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조정 전 합의	21	32	40	21	15	28	70	48	76	351
조정성립	30	29	14	12	20	6	18	13	16	158
조정불성립	19	15	10	20	15	15	25	39	47	205
기 각	55	20	8	11	17	26	15	22	5	179
각 하	1	3	18	265	4	4	2	1	7	305
신청취하	-	44	83	66	63	89	161	152	201	859
소계	126	143	173	395	134	168	291	275	352	2,057

주: 기각 -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 각하 -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통계. <https://www.kopico.go.kr/main/main.do> (검색일: 2020.05.08.). 정부24. 행정전문용어사전. <https://www.gov.kr/main?a=AA170WHDicAppNew> (검색일: 2020.05.08.)

○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2011년 126건에서 2019년 352건으로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이 발생한다면, 조정 전 합의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 취하가 305건(단, 2014년에 편중), 조정불성립이 205건 등의 순이었음.

그림 2-4. 농정원의 농업인번호 추진에 관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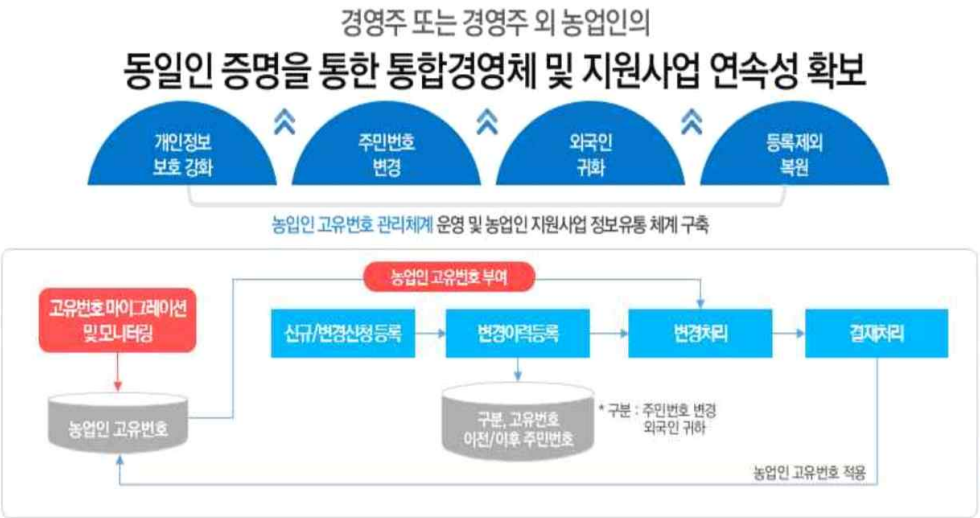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단위 농업지원사업, 영농 현황 인식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업인번호는 영문과 숫자의 단순조합인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내부적 연계 데이터로만 활용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보조사업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성명, 생년월일, 혹은 남녀 구분 정보만 수록하는 실정임. 따라서 경영체등록번호는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고, 경영정보와 사업 간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선진국에서 개인농 활성화에 대한 추세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업인번호 도입과 체계적인 번호 체계 구성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관련 기구의 역할 및 활용 동향

2.1. 관련 기구의 역할

○ 농업경영체등록제 DB와 관련된 관리 및 활용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 학계 등 6개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의 총괄적인 업무를 당당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향 및 방안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고 있음.
-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DB 자료의 수집과 검증 등의 업무를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8)]
- 농정원은 농업경영체 DB의 유통 채널로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초 데이터 저장,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 로직 개발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9)]
- 지자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정책(직불금, 자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사업 지원 적격성 검증 등의 현장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학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부 농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등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 주체의 정보 제공 및 활용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2. 농업경영체 DB 정보 제공 경로

○ 본 절에서는 농업경영체 DB 활용의 정보 제공 경로를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

- 한석호 외(2017)의 방법론은 활용하여 정보 제공 경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

8) 농업경영체등록제에 종사하는 인원은 2019년 기준 총 765명이며 이중 144명이 담당 공무원, 등록·관리 지원 및 등록정보의 정확도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원이 621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담당공무원의 경우 2016년까지 126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44명이 되었으며, 조사원의 경우 2014년 일제조사시기에 702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621명 수준으로 유지 중임.

참고. 농업경영체 담당 인력 및 인건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담당 공무원(명)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36	142	144
조사원	인원(명)	697	621	621	621	702	642	621	621	621	621
	인건비(억원)	94	97	101	105	126	123	126	134	149	156

9) 농정원 Agrix운영센터 인력 및 유지보수 예산(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유지보수비: (17) 15.4억 원, (18) 18.4억 원, (19) 20.3억 원, (20) 25.5억 원
- 인력: 연간 30명 내외로 사업단위로 업무증가 시 추가/감소 탄력적 운영

통한 공급,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업경영체 DB연계를 통한 공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한 집계자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을 통한 공급으로 나누어 살펴봄.

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농림사업의 모든 과정을 전산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15개 농림사업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농업경영체 정보 활용을 포함한 보조·융자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경영체 정보 획득이 가능한 자는 국비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중앙정부부처의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며, 각각의 지원사업별 농업경영체 DB 정보 획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 등록조회서비스 제공은 2018년 기준 월평균 9,373건, 2019년 기준 월평균 11,940건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농업인의 지원사업 선정요건 등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업경영체 DB 연계

○ 현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업경영체 DB가 연계되어 정보 수요자들에게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연계 솔루션 활용 방식(EAI)과 타기관 OPEN-API, 지방농정지원 OPEN-API 방식 등의 연계방식이 있음.

- 연계 솔루션 활용 방식(EAI)은 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농업경영체 DB를 연계하여 경영체 정보, 농업인 정보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2019년 12월 기준으로 완료 14건, 진행 2건으로 전체 16건에서 활용됨.

표 2-6. 연계 솔루션 활용 방식(EAI) 연계 현황

	연계기관	관련 시스템	연계항목
1	농업은행	경영정보시스템(영농도우미)	경영체 정보, 농업인 정보
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경영체 정보, 농업인 정보
3	농림축산검역본부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	경영체 정보, 가축사육정보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빅데이터 센터	경영체 정보, 농업인 정보

5	건강보험공단	농업인건강보험지원	경영체 정보, 농업인 정보
6	국민연금공단	농업인연금보험지원	경영체 정보, 농업인 정보
7	e나라도움	e나라도움	경영체 정보
8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추진단	경영체 정보
9	농협카드	-	경영체 등록여부
10	NH손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11	NH생명	정책보험시스템	경영체 단순 조회
12	식약처	-	농지경영정보
13	위텍스	지방세감면시스템	지방세 감면 대상
14	보건복지가족부	행복e음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정보
15	해양수산부(예정, 시기 미정)	수산직불제관리시스템	조건불리 직불제 지급 여부 확인 조회
16	NH손해보험(예정, 시기 미정)	-	경영체 정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타기관 OPEN-API는 전체 2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정보 조회, 무인발급기 증명서(확인서) 발급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음.

표 2-7. 타기관 OPEN API 방식 연계 현황

	활용기관	활용 API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대장 조회, 경영체 농지 정보 조회, 경영체 농업인 정보 조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발급기 증명서(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법인 정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자체의 경우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모두 관리해야 하므로 민간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정보 제공에 일부 어려움이 존재함.
  · 첫째, 해당 시스템과 농업경영체DB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있지 않아 지자체 시스템 외에 Agrix나 지방재정시스템 등에 중복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 둘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DB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무에 반영하기에 적시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별 농가수, 품목별 현황 등 기초적인 단순 집계자료로 지방농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한석호 외 2017).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경영체 DB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지원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OPEN-API 방식을 통해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과 지자체 정보시스템(지자체 보조시스템)의 연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표 2-8. 지방농정지원 OPEN API 방식 연계 현황

	활용기관	활용 API	
1	경기도 파주시	· 농지 정보 조회	· 친환경인증 정보 조회(농업인 번호로 조회)
2	전라북도 남원시	· 부정당 환수 정보 조회	
3	전라북도 김제시	·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조회	· 품목 코드 정보 조회
4	강원도 인제군		
5	경상북도 봉화군	· 농지 수혜 이력 조회	· 농업인 수혜 이력 조회
6	경상남도 밀양시	· 지자체 수혜이력 조회	· 일반현황 정보 조회
7	경상북도 영주시	· 가축 사육 정보 조회	· 친환경인증정보 조회
8	경상북도 익산시		
9	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인번호 지역별 일괄조회	· 교육 이수 정보 조회
10	경상북도 성주군	· 농업인번호 조회(개인)	· 농업인번호 조회(법인)
11	경상남도 합천군	· 요청 처리 결과 조회	· 축산업인허가정보 조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한 집계자료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10]는 2016년부터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 서비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직접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성별·연령·농지면적·재배품목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한 해의 마지막 일자(12월 31일) 등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집계 정보이며,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회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실제 농업인·농업법인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재배품목, 가축·곤충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은 농업인이 등록한 정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읍면동별·상세 품목별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농업·농촌 관련 학술적·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등록정보는 농가, 농업법인별을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됨. 하위 항목에는 지역별 재배·사육현황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 절에서 분석함.
- 농업경영체 조회서비스 접속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 하반기에는 약 4만 건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 14만 건으로 증가하였음.

10)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그림 2-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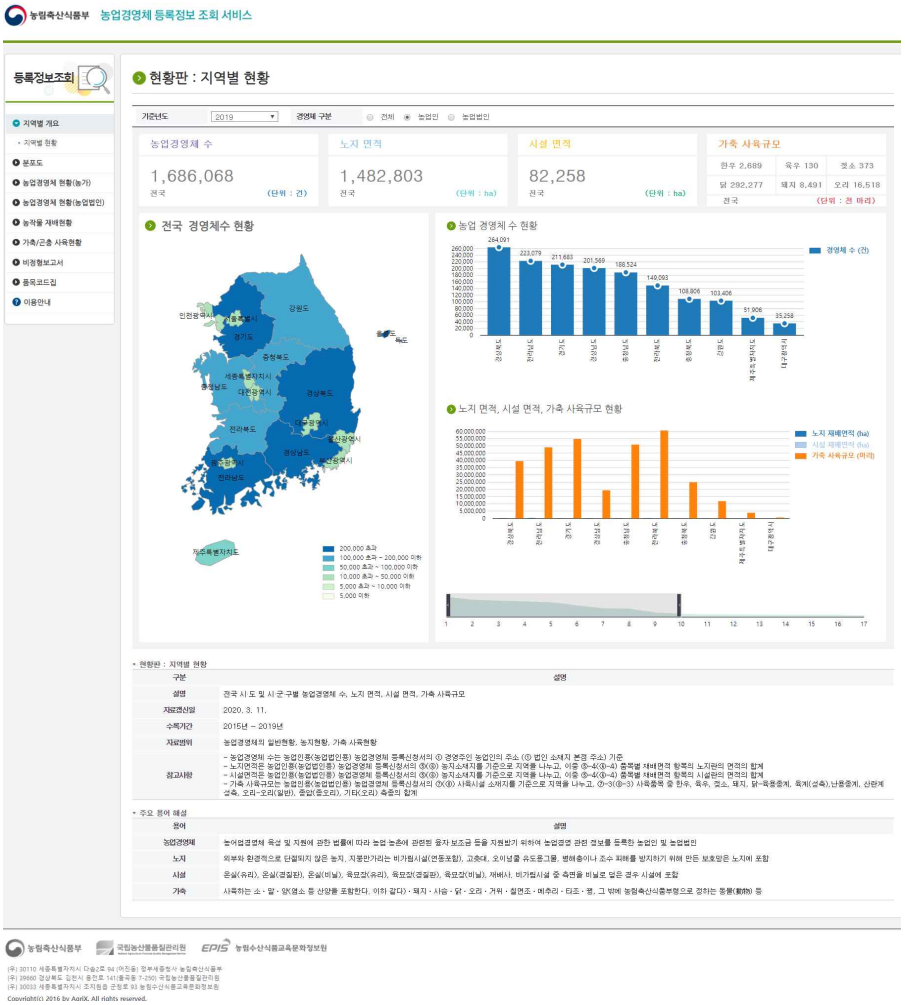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검색일: 2020.01.28)

라.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요청 시 정보 제공

○ 정보 수요자가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을 통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이용 목적에 적합한 항목에 한하여 원자료 또는 집계·가공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 정보수요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정보를 요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운영센터에 자료 분석 및 가공을 지시함. 추출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검토를 거침.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정보 수요자에게 보안 각서 등 필요 서류를 받은 후 정보를 송부함.

그림 2-6. 공문으로 농업경영체 DB 요청 시 정보 획득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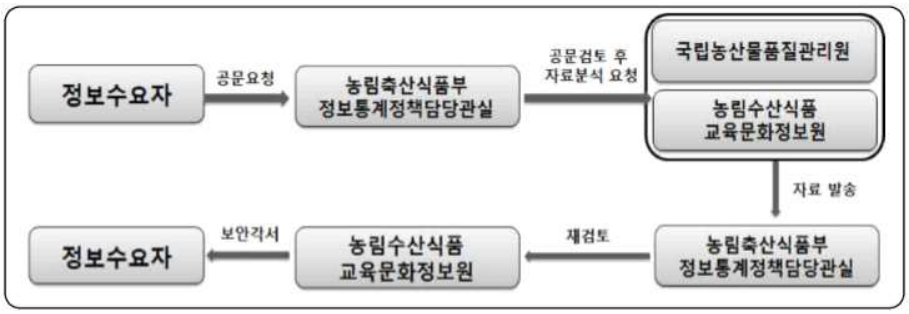

자료: 한석호 외(2017)

○ 공문을 통한 농업경영체 DB 정보 요청 목적은 '농업인 자격증명·확인용', '정부 측면에서 각종 농정 사업의 실시 근거 및 참고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2-9. 농업경영체 DB 자료 제공내역

이용목적 유형	사례
농업인 자격증명·확인용	2016년도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확인(법인세 감면대상여부 확인), 행복바우처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 확인 및 추출 등
농정 사업 실시 근거 및 참고용	가금류 축종별 농가수 및 마리수(AI 방제목적), 살구 주소 및 면적(식물병해충 분포조사 및 확산차단), 과수 재배 경영체 일반현황 및 농지현황(과수실태조사 표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영농경력별 경영주 현황(예산규모 참고용), 제주도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건수(여성 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기초자료), 여성농업인 경영체 등록현황(농식품부 여성농업인 기초자료), 2016년 시군구별 벼 재배면적 및 농가수(수익보장보험 적용 규모별 소요예산 분석)

자료: 한석호 외(2019)를 활용하여 필자의 수정·보완

2.3. 활용 사례

2.3.1 정책 활용

가. 사업 연계 및 정책홍보

○ 농업경영체 DB는 정책사업에 연계되어 활용되며, 활용 방식에 따라 통합관리형, 정보활용형, 등록확인형으로 나눌 수 있음. 2019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DB가 활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통합관리형으로 활용된 쌀직불제, 밭직불제 등임.

○ 정보활용형의 경우 아래 나열된 다양한 정책에 농업경영체 DB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등록확인형은 단순히 농업경영체 DB 등록 여부 확인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임.

표 2-10. 2019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연계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통합관리형	쌀(고정, 변동)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정보활용형	친환경(농업, 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동계,_하계),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재해보험(농작물, 농업인안전), 유기질비료, 토양계량제, 과원규모화(과원매매/임대차),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업자금이차보전, 원예시설현대화(고추비가림) 등
등록확인형	면세유사후관리, 논타작물재배지원, 보험료(건강/연금), 농기계임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맞춤형농정지원,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우수종묘증식 보급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연계 지원사업은 2013년 5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15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추진 중임.

표 2-11. 보조사업연계 사업 수 추이

단위: 개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	5	17	41	39	7	6
누계	5	22	63	102	109	1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이러한 연계사업을 안내하고 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목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통해 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목록과 수혜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가능한 사업을 직접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표 2-12.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및 설명
농림사업 정보	 - 농림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의 농업현황과 각 농림사업별 자격요건을 비교·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가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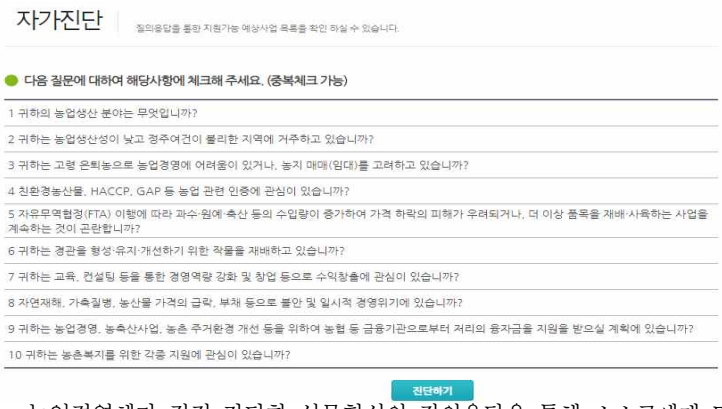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가 직접 간단한 설문형식의 질의응답을 통해 스스로에게 맞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음.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서비스를 통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이 선택한 농림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그 외	- 그 외에도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조회할 수 있는 “농식품사업 지침조회”서비스, 각종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홈페이지
<http://uni.agrix.go.kr/docs7/customized/introduce/IntroduceMain.do>(검색일: 2020.02.20.)

○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통한 정책홍보 외에도, 전년도에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중 당해 신청하지 않은 경영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직불제를 홍보한다거나, 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양파, 포도 등) 등 정책에 해당되는 농가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수요 농가에게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

나. 공익형 직불제

○ 직불제는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시작하게 됨. 공익직불제도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운용됨.

○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통합함.
- 통합 후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성함.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이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성됨.

○ 면적직불금은 논·밭,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를 차등화함. 또한, 이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있는 농업인을 단위로 지급함.

○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단위로 지급하며, “농가소득추진안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확인을 거쳐 지급됨. 이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

다. 지자체 활용

○ 남원시는 2020년 기준 150여개 이상의 농림분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 중 농정과, 농촌활력과 등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등의 사업에 자격조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활용하고 있음.

○ 김천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김천시 농업인대학 교육,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신청서류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자격요건,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대상 복지바우처 등 지원사업 정책의 도입타당성 검토,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 정책 발굴(전라북도 65세 이상 농가 현황 및 농업법인의 조수입 현황정보) 등과 같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를 활용함.

○ 이밖에도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차원이나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함.

2.3.2. 연구 및 조사자료

가. 연구 및 분석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경영체의 신기술도입 과정 및 도입요인을 분석하고, 영농활용 신기술 도입농가 대상 경영성과 및 일반농가의 기술·신품종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함.
- 또한,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을 이용하여 관측 분석에 활용하고, 품목별 작목전환 수익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활용함.
-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역별 축산농가, 사육두수, 재배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정보지도(map)를 업데이트함.
- 국립식량과학원은 권역별·품목별 재배현황을 활용하여 잡곡 재배농가의 생산성 실태 및 저수요인 분석연구에 이용함.
- 채소류 및 밭 식량작물의 주산지 기준 지정에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고, 품목별 기준에 충족하는 시·군·구 주산지 지정기준을 고려함.

나. 과수화상병·가축질병 예찰 및 방제를 위한 기초자료

- 2015년 5월 경기 안성시 및 충남 아산시 일대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으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농지위치, 재배면적, 경영형태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함. 이후 3년 동안 농업경영체 DB의 사과·배 농지위치, 경영형태, 재배면적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함.
- 가금류 농가수 및 마리수 자료를 활용하여 AI 방제목적의 기초자료로 이용함.
- 동충하초 제품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이 발생함에 따라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 정보를 방제 및 예찰에 활용함.

3.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현황

3.1. 개요

○ 2019년 기준, 전국의 농업경영체 수는 169만 9,048개이며, 이 가운데 '농업인 운영 경영체'[11]는 168만 6,068개로 약 99.2%를 차지하며, 농업법인은 1만 2,980개로 약 0.8%를 차지함.[12]

- 농업경영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약 26만 4,100개로 비중은 약 15.7%임. 다음은 전라남도 약 22만 3,100개(13.2%), 경기도 약 21만 1,700개(12.6%), 경상남도 20만 1,600개(12.0%), 충청남도 18만 8,500개(11.2%) 순이며, 상위 5개 도의 비중은 약 64.6%로 지역 편중이 높은 편임.
- 전체 농업경영주(169만 9,048명) 가운데 남성 경영주는 122만 385명으로 약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경영주는 약 27.6%임. 남성 경영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및 강원도로 성비는 약 3.2인 반면, 여성 경영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성비는 약 2.1임.
- 전체 농업법인(1만 2,980개)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은 6,897개로 비중은 약 53.1%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6,083개로 비중은 약 46.7%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2,606개(20.1%)였으며, 다음은 전라북도 1,918개(14.8%), 경상북도 1,575개(12.1%), 충청남도 1,538개(11.8%), 경기도 1,356개

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에서는 '농업인'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특정한 사람(人)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1개 농가(혹은 1명의 농업인)가 여러 개의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사례(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동시 진행)도 있어 '농가'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부정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라는 의미로(익숙하지는 않지만) '농업인 운영 경영체'라고 표현하였음. 6차 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농업인 운영 경영체'(또는 '농업인 운영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인 운영체')로 표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⑤(⑥)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눔.

(10.4%) 순이었음.

· 지역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84로 가장 높았으며(1,688:918), 서울은 0.08로 가장 낮았음(5:64). 대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비중이 높았으며, 도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그림 2-7. 농업인 운영 경영체(좌)와 농업법인(우)의 지역별 분포도(2019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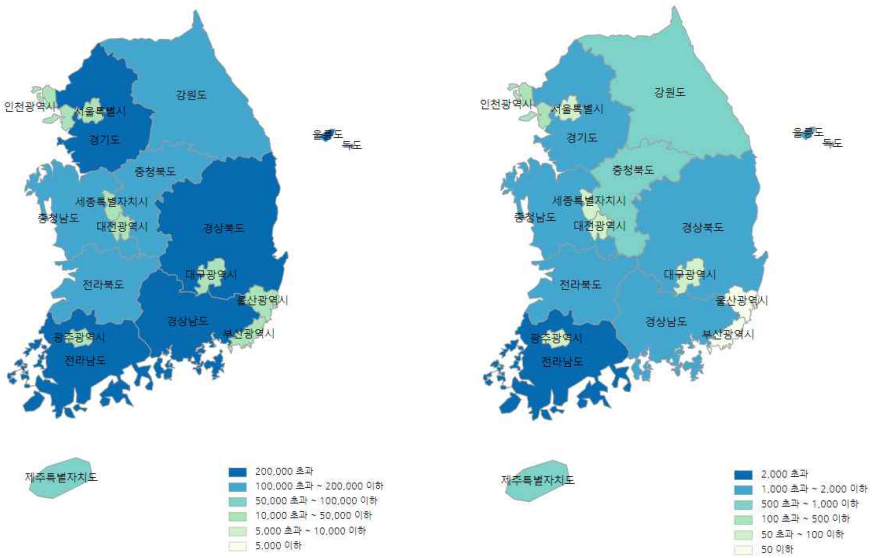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표 2-13. 농업인 운영 경영체와 경영주의 지역별·성별 분포(2019년)

단위: 명, 개

시도	농업인 운영 경영체					농업법인(농축산 포함)		
			경영주 성별					
	수	비중	남	여	성비		영농	회사
서울	19,618	1.2	13,655	5,963	2.3	69	5	64
부산	19,722	1.2	13,479	6,243	2.2	48	13	35
대구	35,258	2.1	25,472	9,786	2.6	83	23	60
인천	23,385	1.4	17,019	6,366	2.7	118	31	87
광주	26,528	1.6	17,987	8,541	2.1	97	28	69
대전	22,355	1.3	16,272	6,083	2.7	58	15	43
울산	25,410	1.5	17,679	7,731	2.3	42	21	21
세종	11,635	0.7	8,629	3,006	2.9	76	31	45
경기	211,683	12.6	161,559	50,124	3.2	1,356	356	1,000
강원	103,406	6.1	78,906	24,500	3.2	694	395	299
충북	108,806	6.5	82,474	26,332	3.1	846	430	416

충남	188,524	11.2	139,745	48,779	2.9	1,538	856	682
전북	149,093	8.8	105,624	43,469	2.4	1,918	1,146	772
전남	223,079	13.2	151,254	71,825	2.1	2,606	1,688	918
경북	264,091	15.7	194,089	70,002	2.8	1,575	818	757
경남	201,569	12.0	138,015	63,554	2.2	1,157	667	490
제주	51,906	3.1	38,527	13,379	2.9	699	374	325
총계	1,686,068	100.0	1,220,385	465,683	2.6	12,980	6,897	6,083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 전체 농업경영주(169만 9,048명) 가운데 최빈 분포 연령층은 60대로 51만 8,694명이었으며, 전체의 30.8%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은 70대와 50대로 각각 41만 3,253명(24.5%) 및 38만 4,734명(22.8%)였음. 반면 20대, 30대 농업경영주는 각각 5,989명(0.4%), 3만 4,203명(2.0%) 순으로 비중이 작았음.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농업경영주 가운데 75세 이상인 고령 노인 경영주의 비중은 약 23.3%로 나타났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위 3대 지역은 전라남도 29.7%, 충청남도 27.2%, 경상남도 25.4% 순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전체 농업경영주 가운데 40대 미만인 청년 경영주의 비중은 약 10.4%로 나타났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위 3대 지역은 제주도 21.3%, 광주광역시 13.4%, 전라북도 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도는 청년 경영주 비중이 고령 노인 경영주 비중을 상회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반면, 인천광역시(8.0%), 부산광역시(8.9%), 충청남도(9.0%)는 청년 농업경영주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에 외국인 농업경영주는 약 500명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5대 지역은 경기도(114명), 강원도(54명),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49명), 경상북도(44명)로 나타났음.

표 2-14. 농업경영주의 지역별·연령별 분포(2019년)

단위: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계	비중	
									A(靑)	B(老)
서울	63	536	1,624	4,768	7,200	4,338	1,089	19,618	11.3	14.5
부산	40	330	1,388	4,774	7,597	4,461	1,132	19,722	8.9	14.5
대구	55	676	3,123	9,420	12,267	7,522	2,195	35,258	10.9	15.1
인천	59	319	1,485	5,280	7,533	5,977	2,732	23,385	8.0	23.2
광주	86	703	2,774	7,009	8,038	5,914	2,004	26,528	13.4	17.3
대전	53	467	1,926	6,246	7,782	4,490	1,391	22,355	10.9	14.8
울산	39	393	2,057	7,273	8,849	5,050	1,749	25,410	9.8	15.2
세종	29	316	1,066	2,847	3,728	2,487	1,162	11,635	12.1	20.2
경기	683	4,193	16,921	54,172	70,070	47,005	18,639	211,683	10.3	18.7

강원	308	1,713	7,929	26,400	34,828	23,615	8,613	103,406	9.6	19.3
충북	356	1,851	7,760	26,037	36,460	25,193	11,149	108,806	9.2	21.4
충남	623	3,412	12,959	38,680	56,827	48,488	27,535	188,524	9.0	27.2
전북	916	3,979	13,297	32,089	42,480	38,008	18,324	149,093	12.2	24.7
전남	1,077	4,876	17,238	43,939	59,213	63,550	33,186	223,079	10.4	29.7
경북	856	4,887	20,007	56,966	82,336	66,659	32,380	264,091	9.8	24.7
경남	524	3,514	15,477	44,417	61,024	50,405	26,208	201,569	9.7	25.4
제주	222	2,038	8,804	14,417	12,462	10,091	3,872	51,906	21.3	16.4
총계	5,989	34,203	135,835	384,734	518,694	413,253	193,360	1,686,068	10.4	23.3

주: A는 청년농업인의 비중으로 40대 미만인 자를 의미함(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B는 고령 노인(old-old ages) 농업인의 비중으로 7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함.(65~75세는 연소 노인(young-old ages)로 분류됨(전해숙·강상경 2012).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 농업경영주를 전생애 종사자와 타산업 전환자로 구분하여 비중[13]을 계산하면 0.90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의 비중은 0.45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전라북도(0.55), 충청남도(0.67)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반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비중은 3을 상회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2.64로 높은 편이었음.

- 전업과 겸업의 비중(겸업율)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높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경영주의 종사 형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도시 지역의 타산업 전환자가 많았으며, 이들은 겸업의 비중도 높았음. 반면, 전라남도 등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전생애 종사자 수 및 전업농의 비중이 높았음. 이를 산포도로 작성하면(그림 2-8), 농업 누적 유입율이 높을수록 겸업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5. 농업경영주의 종사 형태(2019년)

단위: 명, %

	전생애 종사 (B)	타산업 전환 (A)	비중 (A/B)	전업(B)	겸업(A)	비중 (A/B)	5년 미만
서울	3,356	14,933	4.45	9,412	10,206	1.08	46.7
부산	4,715	15,007	3.18	11,468	8,254	0.72	35.3
대구	8,458	26,791	3.17	19,383	15,875	0.82	33.3
인천	10,622	12,712	1.20	16,075	7,310	0.45	25.2
광주	9,021	17,310	1.92	16,236	10,292	0.63	34.9
대전	5,020	17,323	3.45	12,012	10,343	0.86	35.2
울산	6,980	18,430	2.64	13,819	11,591	0.84	26.1

13) 이는 넓은 의미에서 농업의 신규 유입농업인 비율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음. 이는 5년 미만 농업경영체의 비중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등에서 낮게 나왔기 때문임. 그러나 타산업 전환 시기 및 형태가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2019년에 타산업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농업경영주가 79만 9,194명(0.90)라는 의미가 아니며, 2019년까지 누적된 타산업 유입 농업경영주가 79만 9,194명(0.90)이라는 의미임. 본 연구에서는 이를 농업 누적 유입율이라고 명명함.

세종	5,981	5,646	0.94	7,914	3,721	0.47	24.9
경기	92,969	117,212	1.26	137,563	74,120	0.54	21.1
강원	45,736	57,644	1.26	73,179	30,227	0.41	24.5
충북	53,495	55,296	1.03	80,906	27,900	0.34	25.2
충남	112,716	75,774	0.67	145,911	42,613	0.29	18.1
전북	96,296	52,701	0.55	120,785	28,308	0.23	23.2
전남	154,051	68,998	0.45	176,639	46,440	0.26	19.3
경북	136,950	127,115	0.93	207,622	56,469	0.27	23.1
경남	110,330	91,194	0.83	149,650	51,919	0.35	22.1
제주	26,656	25,108	0.94	33,566	18,340	0.55	26.6
총계	883,352	799,194	0.90	1,232,140	453,928	0.37	23.1

주: 5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각 지역의 농업경영주(A+B)에서 5년 미만 농업경영주의 수를 나눈 것임.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림 2-8. 농업경영주의 전생애종사 및 타산업 전환자와 전겸업 수의 상관관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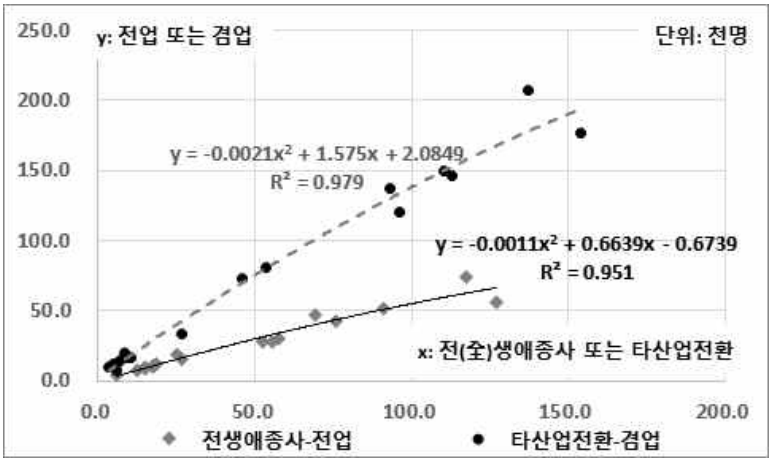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분류별로 농업경영체가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체 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표적 예시: 농작물 재배 경영체(169만 1,760개), 가축 사육 경영체(16만 7,764개), 곤충 사육 경영체(3,201개) 합산 시 186만 2,725개로 계산됨. 이는 상술한 전국의 농업경영체 수(169만 9,048개)와 16만 3,677개의 차이가 존재
-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다음 절 부터는 재배 면적 혹은 사육 규모 중심으로 기술하며, 농업경영체 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중요 참고 : 농업경영체 통계 해석 시 유의 사항
○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의 경영체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한 농업경영체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5개 필지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3개 필지,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2개 필지에 각각 0.1ha의 시설수박을 재배하는 경우, 시도별 합계: "경영체 1건 및 재배규모 1.0ha", 시군별 합계: "경영체 2건 재배규모 각 0.8ha, 0.2ha", 읍면동별 합계: "경영체 3건 재배규모 각 0.5ha, 0.3ha, 0.2ha"로 표시

○ 같은 지역 내 한 농업경영체가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한 농업경영체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콩과 팥을 0.1ha씩 각각 2개 필지와 3개 필지에 재배하는 경우 대분류별 합계는 경영체 1건, 재배규모 0.5ha, 소분류별 합계는 경영체 2건, 재배규모 콩 0.2ha, 팥 0.3ha로 표시

○ 농작물재배 농업경영체수는 대분류(품목) 선택시 지역별+품목별 경영체 수가 합산되어 경영체 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영체가 미곡류, 과실류, 수실류 재배시 경영체 3건, 한 경영체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미곡류, 전라남도 나주시에 과실류 재배시 경영체 2건

3.2 농업 분야

○ 2019년 기준, 전국 재배면적[14]은 159만 1,542ha로 농업인 운영 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156만 5,061ha로 전체의 98.3%를 차지하며, 농업법인이 경작하고 있는 2만 6,481ha로 1.7%를 차지함. 추가로 재배면적 중 노지 면적은 148만 2,803ha로 약 98.4%를 차지하며, 시설 면적은 8만 4,395ha로 1.6%를 차지함.
-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32만 1,449ha로 전체의 20.2%를 차지함. 다음은 경상북도 23만 5,234ha(14.7%), 충청남도 22만 987ha(13.9%), 전라북도 21만 6,256ha(13.6%), 경상남도 15만 9,072ha(10.0%) 순이었음.
  · 전국의 농업법인은 4,993개로 재배면적은 26,481ha로 평균 재배면적은 5.3ha였음. 평균 재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남도로 12.7ha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과 충청남도, 제주도 순으로 평균 재배면적은 각각 7.7ha과 6.9ha, 4.9ha였음.

표 2-16. 농업인 운영 경영체와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2019년, 농업 분야)

단위: 개, ha

	농업 경영체		농업인 운영 경영체		농업법인(농업 관련)	
	수	면적	경영체	면적	경영체	면적
서울	1,879	505	1,873	504	6	2
부산	13,431	5,302	13,412	5,271	19	31
대구	19,667	7,535	19,653	7,527	14	8

14) 노지·시설의 면적은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⑤-4(⑥-4) 품목별 재배면적 항목의 노지·시설란의 면적이며, 재배면적은 작기를 반영하므로 실제경작면적 또는 공부상면적보다 클 수 있음.

인천	22,451	17,088	22,414	16,803	37	285
광주	17,251	9,049	17,222	9,010	29	39
대전	10,916	3,495	10,899	3,474	17	21
울산	22,870	8,810	22,840	8,797	30	13
세종	12,843	7,506	12,805	7,409	38	97
경기	211,582	137,581	210,966	136,155	616	1,426
강원	107,832	94,588	107,419	93,176	413	1,412
충북	116,895	95,184	116,581	94,591	314	593
충남	201,847	220,987	201,197	216,510	650	4,476
전북	150,376	216,256	149,921	214,875	455	1,381
전남	236,069	321,449	235,048	308,514	1,021	12,935
경북	285,786	235,234	285,294	234,164	492	1,070
경남	208,179	159,072	207,723	158,282	456	790
제주	51,886	51,901	51,500	49,999	386	1,902
총계	1,691,760	1,591,542	1,686,767	1,565,061	4,993	26,481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그림 2-9. 농업인 운영 경영체(좌)와 농업법인(우)의 지역별 경작 면적(2019년)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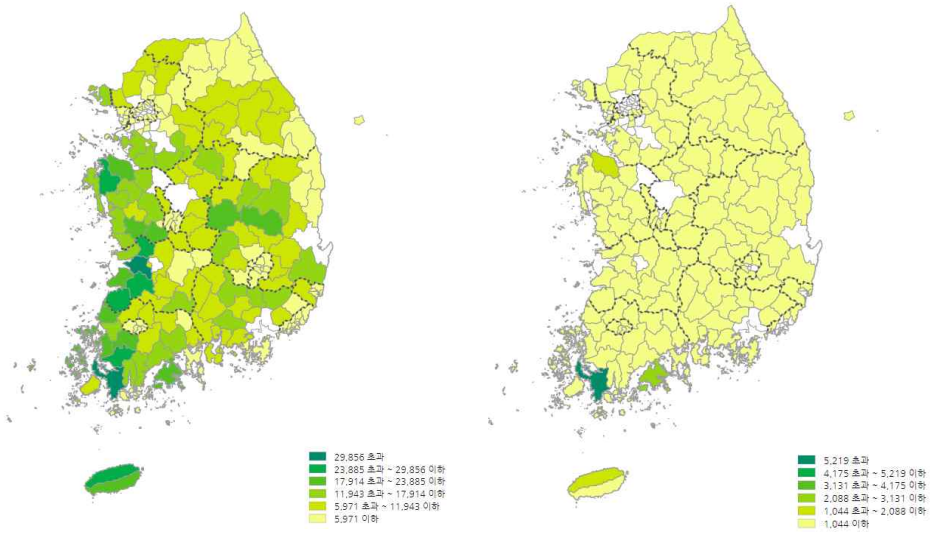

주: 노지 및 시설 면적의 합계 기준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3.3. 축산업 분야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에서 사육(사양)하는 축종은 27개이며, 곤충은 30개 종류임.

- 육계, 산란계, 메추리, 오리, 돼지, 한우, 벌, 산란용 어미, 개, 산양, 꿩, 젖소, 육우, 토

끼, 관상조, 사슴, 말, 기러기, 면양, 오소리, 거위, 칠면조, 타조, 당나귀, 뉴트리아, 청둥오리 등 26개와 기타 생축 1개

- 거저리, 동애등에, 귀뚜라미, 지렁이, 포식응애, 꽃무지, 풍뎅이, 굼벵이, 파리, 누에, 메뚜기, 매미, 뒤영벌, 사슴벌레, 거비, 무당벌레, 나비, 호리꽃등애, 반딧불이, 꿀벌, 지네, 하늘소, 여치, 잠자리, 개미, 물방개, 좀벌, 고치벌, 노린재 등 29개와 기타 수서곤충 1개

○ 전국의 가축 사육 두수는 4억 133만 마리이며, 시설 수는 17만 7,606개로 축산업 분야 농업경영체는 평균 1개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가축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7,268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전체의 18.1%를 차지하였음. 다음은 전라북도 7,138만 마리(17.8%), 충청남도 6,473만 마리(16.1%), 전라남도 5,477만 마리(13.6%), 경상북도 4,860만 마리(12.1%) 순이었음.

표 2-17. 가축 및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지역별 분포(2019년)

단위: 개, 개, 천 마리

	가축			곤충		
	경영체	시설	사육 두	경영체	시설	사양 마리
서울	50	48	4	4	4	3,650
부산	398	410	145	18	18	47
대구	1,030	1,037	694	28	27	49
인천	1,288	1,354	2,062	66	66	40,093
광주	472	482	327	19	18	724
대전	662	674	178	20	22	57,407
울산	2,401	2,506	726	48	56	657
세종	1,350	1,463	6,768	15	14	1,096
경기	21,575	23,357	72,679	503	533	453,107
강원	12,065	12,436	15,539	246	252	2,141
충북	11,944	12,809	32,912	281	307	1,736,377
충남	20,734	22,238	64,735	331	344	11,098
전북	15,602	17,332	71,382	325	365	25,353
전남	25,305	26,804	54,775	366	372	360,646
경북	30,901	32,482	48,599	486	505	150,768
경남	19,081	19,572	24,793	407	421	62,864
제주	2,906	2,602	5,015	38	32	1,220
총계	167,764	177,606	401,333	3,201	3,356	2,907,297

주: 곤충은 품종별로 사양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합산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표의 수치는 지역별 산업 규모 차이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함.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그림 2-10. 가축 사육(좌)과 곤충 사양(우) 마리 수의 지역별 규모(2019년)

단위: 마리, 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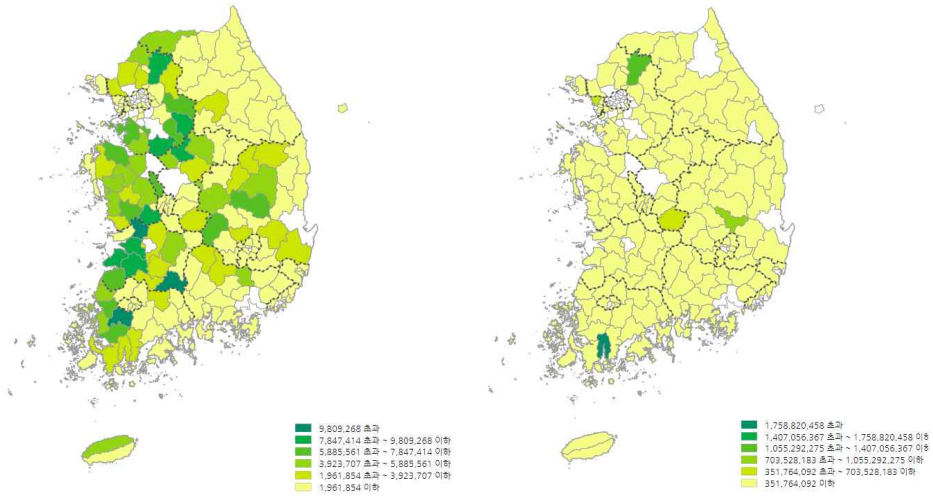

주: 농업인 운영 경영체 및 농업법인의 합계 기준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4. 시사점

○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번호는 1990년 농업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해오다,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입됨.

-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8~10만 개의 농업경영체가 신규로 등록하며, 2019년 말 기준 총 169만 9,048개 농업경영체가 등록함.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각종 농업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 DB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농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경영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 등 농업 관련 정책 및 연구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중요성에 비해 단순 방식으로 만들어진 현 농업경영체 번호의 체계적이지 못하고, 의미가 부족하며, 사용자 친화적 방식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존재함.

○ 농업정책의 대상이 농가 또는 농업인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의

수혜자를 식별하고 각 정책과 수혜자를 매칭하여 추적·관리하는 등 농업경영체 내의 농업인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개인식별체계(이하 농업인번호)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따라서 농업인번호를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된 농업경영체 번호체계의 변경 필요성 역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3장

식별번호 생성방법 및 사례

1. 식별번호 생성의 이론 및 방법론 검토

1.1. 식별번호 생성의 이론 검토

○ 농업인번호의 생성방법을 검토하기 앞서 식별번호가 가져야할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았음.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는 국가 표준인 UCI(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에 의해 분류되며, UCI는 URN 기반으로 이뤄져 있음.

- URN은 UR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URL 기반의 인터넷 자원 식별체계는 위치에 상응하는 자원이 없어지거나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검색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정확한 식별기능이 떨어져 자원 유통에 적합하지 않음.
- URN은 콘텐츠 위치, 프로토콜, 호스트 등에 의존하지 않고 각각의 콘텐츠를 식별하는 메커니즘으로 특정 자원, 구체적으로 말해서 콘텐츠(Content)의 인터넷 식별자임. 따라서 URN은 콘텐츠의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콘텐츠 자체를 지시한다는 특징이 있음(김평수 2011).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경영체번호는 홈페이지, OPEN-API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 정보 자원의 융합·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은 우리 농업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URN 속성을 참고하여, 식별 체계를 생성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URN은 IETF 표준 규격[RFC 2141, RFC 3406]에 근거하여 제작되며, 유일성 · 영속성 · 확장성 · 융통성 등[15]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유일성: 최대 하나의 자원에 할당되어야 하며 재할당 되지 않아야 함.
- 영속성: URN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식별자에 대응되는 자원의 수명에 관계없이 영구적임. 또한, 한번 한 자원에 할당된 식별자는 그 자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원을 식별하기위한 용도로 재할당 되는 일이 없고, 재할당하지 않더라도 영

15) 김평수(2011)에서는 규모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문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

속적으로 URN이 보장되어야 함.

- 확장성: 양적 확장성과 구조적 확장성이 있음. 양적 확장성은 URN 길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앞으로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보 자원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함. 구조적 확장성은 URN이 길이나 구조 등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임.
- 융통성: URN을 URL 등의 다른 이름공간에 있는 식별자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함. 이는 URN은 정보 자원의 이름일 뿐, 자체적으로 자원의 위치 등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우리나라 UCI는 다음 9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되었음(UCI 홈페이지).

- 포괄성(Global scope - 세계적인 범위를 포괄): 단일한 자원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가 적용되어야 함. 만일 식별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식별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동일한 식별자를 지닌 두 개 이상의 자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UCI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포괄함.
- 유일성(Global uniqueness - 오직 하나의 식별코드): 동일한 자원에 두 개 이상의 식별자가 부여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자원에 동일한 식별자가 부여될 수는 없음. UCI는 디지털콘텐츠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는 국가표준 식별체계임.
- 호환성(Legacy support - 식별체계와의 호환이 가능): 호환성은 기존의 식별체계를 수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UCI에서는 구문구조의 개체 코드(instance code)에서 기존의 식별자인 ISBN, ISSN, ISAN, DOI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의됨.
- 변환성(Resolution - 다른 연결정보로 변환 가능): UCI 식별코드는 해당 URL 또는 다른 연결 정보로 변환이 가능함.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매핑 정보 제공): UCI 식별메타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URN기반 식별체계의 필수메타데이터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 연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 마다 의미 있는 매핑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매핑정보 테이블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UCI 식별메타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공개성(Publicity - UCI의 정보는 모두에게): UCI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등록관리기관은 일반이용자에게 자원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구조의 계층성(Hierarchical structure - 수직적인 구조의 UCI): UCI의 운영구조는 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등록자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적인 구조임.
- 다형성(Polymorphism - 다른 자원에는 다른 UCI): UCI는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형태에 따라 여러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음.[16)]

---

16) 심청전 작품에 UCI를 발급하는 경우:
- 심청전 시나리오 : UCI발급 가능 | UCI:r103+S01scen1234
- 심청전 단행본 : UCI발급 가능 | UCI:r103+S01text1234

- 상속성(Inheritance - Dumb Down의 원칙[17])을 수용): UCI 식별메타데이터에서 한정 코드는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가적인 정확성 없이도 그 메타데이터의 의미 파악이 유용해야 하는 Dumb Down 원칙을 따름.

1.2. 식별번호 생성방식의 방법론 검토

○ 본 절에서는 식별번호 분해 가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식별 번호의 생성 방식을 고려할 것임.[18]

- 식별번호는 분해가능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1) 완전히 분해 가능한 식별번호, (2) 부분적으로 분해 가능한 식별번호, 그리고 (3) 분해 불가능한 식별번호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때 '분해 가능'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 고려요인이며, 통제 번호(Control Number) 유무에 따라 분해 가능 수준이 결정됨.

1.2.1. 완전분해가능 식별번호(유형 1)

○ 완전분해가능 식별번호는 각 자리에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식별 체계를 의미함.

- 대표적인 사례는 ISO 2009의 VIN(차대번호,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와 세계관세기구 WCO의 HS CODE 및 우리나라 농장식별번호와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번호가 있음.

그림 3-1. VIN의 번호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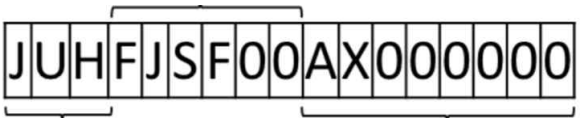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 VIN은 국제적인 공산품 분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17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17자리를 분해하면, 처음 3자리(JUH)는 국제 개별국가의 제조자 식별 번호 부분(World Manufacturer Identifier)이며, 다음 6자리(FJSF00)는 제조 상품의 종류 부

- 심청전 뮤지컬 : UCI발급 가능 | UCI:r103+S01musical1234
- 심청전 공연CD : UCI발급 가능 | UCI:r103+S01perf1234

17) Dumb Down의 원칙: 하위 요소가 있는 메타 데이터와 하위 요소가 없이 여러 개 반복된 값을 가진 메타 데이터를 매핑시, 상위요소(Top Level) 하나에 열거식으로 의미없이 값을 나열하는 것

18) European commission. 2015. The concept of the Unique Agricultural Holding Identifier (UIGR)을 참고하여 작성

분(Vehicle Descriptor Section)으로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모델, 본체, 장비)가 담겨 있음.

- 마지막 8자리는 제품 고유 번호(Vehicle Identifier Section)로 제작연도, 생산 공장, 생산 번호(시리얼 넘버) 등의 정보가 담김.

○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개발된 품목 분류 기준으로 4~6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에 6차 개정이 이루어짐.

- HS는 부(Section)-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로 구성됨.
- 부-류-호는 각 2자리로 구성되며, 국제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소호는 각국의 관세 정책 등 자체 사정에 고려하여 자율화·세분화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4자리의 소호를 사용하며, 따라서 총 10자리임.

그림 3-2. HSK의 번호 구성 체계

자료: 관세청 블로그. 2016.04.07.
<https://ecustoms.tistory.com/4103>

○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9] 1자리와 일련번호 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함.

- 6자리 고유번호는 첫 번째 자리를 권역코드, 두 번째 자리를 축종별[20]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의 법정동순으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함.

그림 3-3. 농장식별번호 구성 체계

1	0	0	0	5	6
①	②	③	④	⑤	⑥
권역 코드	축종 코드	일련번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2014)

19) 서울・인천・경기 1, 강원 2, 충북 3, 세종・대전・충남 4, 전북 5, 광주・전남 6, 대구・경북 7, 부산・울산・경남 8, 제주 9
20) 소: 1, 2, 3, 4번, 돼지: 0, 8, 9번

- 단, 돼지 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는 이미 배부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기초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사육시설은 이미 부여된 농장식별번호 다음부터 상기 부여 방법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함.

○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의 경우 국가번호 3자리를 포함하는 경우에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21]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로 구성됨.

그림 3-4.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구성 체계

2	7	6												

<국가번호>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

자료: 김수석(2013)

○ 우리나라의 차량 번호판의 경우 7자리~8자리[22]이며 차종(승용차: 01~69/100~699, 승합차: 70~79, 화물차: 80~97, 특수차: 98~99), 용도(일반: 가~마/너~저/고~조/누~주, 영업용: 아/바/사/자, 렌터카: 하/허/호, 택배: 배),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됨. 차량등록번호는 차량 등록시 부여받은 일련번호임.

그림 3-5. 우리나라의 차량 번호판 구성체계

1	2	3	가	4	5	6	7

자료: 국토교통부

1.2.2. 부분분해가능 식별번호(유형 2)

○ 부분분해가능 식별번호는 각 자리에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 번호 역시 부여된 식별 체계를 의미함.

- 대표적인 사례는 폴란드의 PESEL(Universal Electronic System for the Registration of Population)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및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있음.

○ PESEL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 고유 식별번호 체계로 총 11자리로 구성됨.

21) 독일의 행정구역 단위 중 최소단위
22) 2019년 9월부터 번호판 체계가 개편되어 신규로 발급되는 차량에 차종에 해당하는 2자리 번호가 3자리로 확장 적용됨.

- 처음 6자리는 출생 년-월-일을 표시하며, 그림 7과 같이 20세기 출생자는 '월'에 해당하는 자리에 01~12의 숫자가 부여되며, 21세기 출생자는 21~32까지의 숫자가 부여됨[23].
- 다음 3자리는 개인 식별 번호이며, 다음 1자리는 성별을 표시하며, 짝수는 여성, 홀수는 남성을 의미
- 마지막 1자리는 통제 번호(혹은 오류 검증 번호)임[24].

그림 3-6. PESEL의 번호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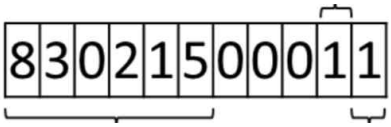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그림 3-7. PESEL의 연도별·월별 번호 부여 방식

분류	1800-1899	1900-1999	2000-2099	2100-2199	2200-2299
1월	81	01	21	41	61
…					
12월	91	12	32	52	72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 6자리(ㄱ~ㅂ)와 뒷부분 7자리(ㅅ~ㅍ)로 구성되어 있음.
- 앞부분은 생년월일을 의미하며, 뒷부분은 분해가능한(정보가 담겨 있는) 번호임.
- 뒷부분의 경우, 1자리(ㅅ)는 성별을 표시하며, 짝수는 여성, 홀수는 남성을 의미함[25] 다음 2~5자리(ㅇ~ㅌ)는 출생 등록지와 출생신고 순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음. 마지막 1자리는 통제 번호임[26].

---

23) 예를 들어, 2001년 1월 29일에 탄생한 사람은 012129가 부여됨. 2101년 1월 29일에 탄생한 사람은 014129가 부여됨(그림 7 2100-2199 참고).

24) PESEL의 유효성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11자리로 구성된 임의의 PESEL 값(ABCDEFGHIJK)에 사전에 지정된 숫자를 곱해준 뒤 합계를 냄(A*1 + B*3 + C*7 + D*9 + E*1 + F*3 + G*7 + H*9 + I*1 + J*3). 합계 값을 10으로 나누고 남은 수(나머지)를 다시 10에서 빼주면 상수 x가 나온다. 이 상수 x를 PESEL의 K와 비교하여 동일하면 옳은 값이라고 판별함. 예를 들어, PESEL이 44051401358이라면, 4*1 + 4*3 + 0*7 + 5*9 + 1*1 + 4*3 + 0*7 + 1*9 + 3*1 + 5*3 = 101가 되고, 101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됨. 1을 다시 10에서 빼주면 9가 되며, 9는 K값(8)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PESEL 값이라고 판정함(위키피디아, 검색어: PESEL).

25) 해당 자리의 번호는 성별, 내외국인 여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됨(위키피디아). 9 : 1801 ~ 1900년에 태어난 남성, 0 : 1801 ~ 1900년에 태어난 여성, 1 : 1901 ~ 2000년에 태어난 남성, 2 : 1901 ~ 2000년에 태어난 여성, 3 : 2001 ~ 2100년에 태어난 남성, 4 : 2001 ~ 2100년에 태어난 여성, 5 : 1901 ~ 2000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6 : 1901 ~ 2000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7 : 2001 ~ 2100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8 : 2001 ~ 2100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함.

26) 우리나라의 통제번호도 PESEL의 방식과 유사함. ㅍ = 11-{(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 ㅍ이며, 10은 0, 11은 1로 표기함(위키피디아).

그림 3-8. 주민등록번호의 번호 구성 체계

자료: 위키피디아(검색어: 주민등록번호)

○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번호는 총 10단위로 구성되며, 첫째 자리는 발행 주체의 국적 및 기관 여부[27]이며, 나머지 9자리는 채번 순서대로 부여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 10. 04[28]).

○ 법인등록번호[29]는 총 13단위이며,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일련번호, 오류검색번호[30]로 구성됨.

그림 3-9. 법인등록번호의 번호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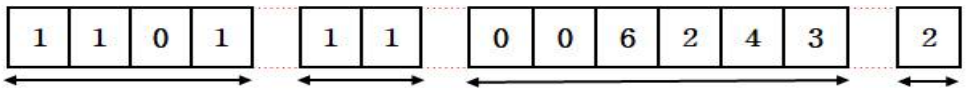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일련번호> <오류검색번호>

자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

1.2.3. 분해불가능 식별번호(유형 3)

○ 분해 불가능한 식별번호는 어떤 자리에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제 번호는 부여된 식별번호 체계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해당 식별번호는 고유 일련번호(unique series number)와 통제번호로 구성되며, 고유 일련번호는 어떤 숨겨진 정보가 없으며, 통제 번호는 생성된 고유 일련번호에 따라 부여됨.
- 대표적인 사례는 폴란드의 ARMA(Agency for Restructuring and Modernization of Agriculture)와 UIGR(Unique Agricultural Holding Identifier)를 들 수 있음.

○ UIGR의 경우 총 9자리로 고유 일련번호 8자리, 통제번호 1자리로 구성됨.

- 통제번호는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되는데, 그림 10과 같이 고유 일련번호에 정

27) 1. 국내 개인, 2. 국내 기관, 3. 외국인/기관
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10.04. 담당자 인터뷰 결과
29)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부록의 부표3, 부표4 참고
30) 법인등록번호의 유효성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12자리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함(1×1 + 1×2 + 0×1 + 1×2 + 1×1 + 1×2 + 0×1 + 0×2 + 6×1 + 2×2 + 4×1 + 3×2 = 28).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28÷10=2)과 나머지(8)를 구함.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10-8=2)을 오류검색번호로 함. 단,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함.

해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값의 나머지 값임.

그림 3-10. UIGR의 번호 구성 체계 및 통제번호 부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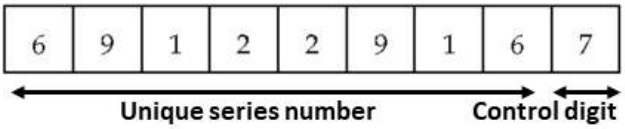

UIGR	6	9	1	2	2	9	1	6	
assigned weights	8	9	2	3	4	5	6	7	
product	8 x 6	9 x 9	2 x 1	3 x 2	4 x 2	5 x 9	6 x 1	7 x 6	
sum	48	81	2	6	8	45	6	42	238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 ARMA는 11자리이며 고유 일련번호 10자리, 통제번호 1자리로 구성됨.[31)]

그림 3-11. ARMA의 번호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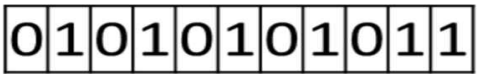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2. 국내외 농업관련 식별번호 유형별 사례

○ 국내외 농업관련 식별번호 사례를 앞서 살펴본 식별번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 사례의 정의, 도입 배경 및 효과를 살펴보았음.

2.1. 완전분해가능 식별번호(유형 1)

가. 우리나라 축산물 이력제에서 활용되는 농장식별번호

○ 농장식별번호의 정의는 이력 관리대상 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임. 이는 축산업 등록제의 고유번호와는 달리 번호에 농장 정보가 담겨있으며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

31) ARMA의 유효성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짝수 열에 있는 값에 23을 곱하여 x를 산출함. 홀수 열에 있는 값에 17을 곱하여 y를 산출함. 이후 짝수 열의 모든 값을 더하여 z를 산출함. 이렇게 도출된 x, y, z를 더한 뒤 7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 값을 다시 7에서 빼줌(상기 주민등록번호, PESEL 주석 참고). 마지막으로 최종 값을 통제번호와 대조하여 유효성을 판별함. 예를 들어, 그림 11은 x 값은 0이며, y값은 85이며, z값은 5이기 때문에 x+y+z=90임. 90을 7로 나눈 나머지 값은 6이며, 이를 7에서 빼주면 1이 됨. 이는 통제번호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효한 번호라고 판정함.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해당 번호의 도입 배경은 농장 정보를 담고 있는 고유번호가 없어 질병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농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4년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돼지를 사육하는 시설(가축사육시설)을 구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농장정보를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정진형 2015[32)]).

- 농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통일된 번호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관리방식에서 발생하였던 잘못된 사육시설 주소 등록, 잘못된 소유 농장 수 등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
- 농장마다 고유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육시설의 주소와 GPS 좌표 등이 확보됨으로써 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농장접근이 가능해짐.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축협 등과 같은 축산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서 농장 정보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별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 없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육이 가능해짐.

나. EU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

○ EU는 1992년 직불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회원국들 간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집행을 위해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을 도입하였음.

○ 현재 IACS는 아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요소 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농업경영체등록에 해당함.

- (1) 전산 데이터베이스(농업경영체(holding)의 지원신청 내용을 기록)
- (2) 농지의 위치식별체계
- (3) 수급권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체계
- (4) 통합관리시스템
- (5) 지원신청을 하는 농업경영주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체계 기록 시스템
- (6) 동물 등록 및 식별 시스템(관련 직불금 지급국가의 경우 해당)

32) 정진형(한우자조금소식지). 2015. 한우농가, "농장식별번호 발급받아야"를 발췌・수정함.

○ 위와 같은 6가지 구성요소 중 식별이 필요한 대상은 “수급권, 농업 필지, 농업경영주”의 3가지 종류이며 이들의 식별체계 및 특징과 등록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 표에 정리된 내용과 같음.

표 3-1 IACS 구성요소 중 3가지 식별 대상의 식별체계 특징

식별 대상	식별체계 및 특징	등록시 수집 정보
지원 수급권	- 수급권 확인과 더불어 지원신청과 농지식별체계와의 대조를 가능하게 해야 함. - 과거 최소 3년간의 자료는 즉각적으로 참조 가능해야 함.	- 전자등록체계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수록함. - 수급권자, 가액, 수급권 성립일, 최근 수급권 이용일, 출처(구매, 임대, 상속 등), 수급권의 종류, 지역적 제한 등
농업 필지	- 농업 필지의 식별체계는 기준 필지(reference parcel)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함. - 이때 기준 필지란 회원국의 GIS에 등록되어 유일하게 식별가능하도록 지리적으로 경계지워진 구역임.	-
농업 경영주	- 각 농업경영주는 IACS가 관리하는 직접지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농업경영주 식별체계는 동일한 경영주가 제출하는 모든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신원을 정확하고 단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농업경영주 식별체계는 IACS가 관리하는 지원프로그램 및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이용됨.	- 수급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로 아래와 같음.[33] - 농업경영주의 신원, 지원대상 제도, 수급권의 식별, 경영체의 모든 농업 필지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자세한 사항, 면적, 위치(필요한 경우 용도와 관개 여부) 등

자료: 김수석(2013)

① 독일의 농업경영체

○ 독일의 농업경영체는 조세법상, 지원법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조세행정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됨.

33) 회원국 정부의 재량으로 매년의 신청서는 전년도 대비 변화만을 표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음. 회원국 정부는 작년도 지급 농지에 기초하여 사전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양식을 배포하며, 그 농지들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제공해야 함.

-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가 IACS 체제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이며, IACS의 구성요소 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함.
-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의 경우 2003~2004년 단일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EU의 법령(이사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회원국에서 제도화하게 됨.
- 이에 따라 2004년 1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InVeKoS[34] 데이터 법」의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관한 기본데이터를 확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

○ 독일은 IACS, 즉 통합행정관리시스템(InVeKoS)을 통해 직불금 집행을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의 인력정보와 토지식별번호를 등록하게 하고, 축산정보를 활용하여 직불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 위에서 제시하였듯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번호 3자리를 포함하는 경우에 총 15자리로,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35]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로 구성됨.

그림 3-12.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구성 체계

2	7	6												

<국가번호>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

자료: 김수석(2013)

○ 등록하는 인력정보는 “경영체주소[36]”, “등록사유”, “법인 등록 혹은 경영체 통합 등록시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 “영농유형”, “가축 사육두수와 수의위생상태”임.

○ 농지데이터의 경우 ‘토지식별번호(FLIK)’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경지대장[37] 상의 최소단위인 필지 중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부여함.
- 토지식별번호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경작하는 필지를 한꺼번에 기재하며, 각 필지별 기재하는 정보는 “토지가 위치한 게마인데 및 토지행정상의 구역”, “경지대장 상의 필지번호”, “해당 필지의 면적”, “토지의 이용(작목) 현황”, “토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이 있음.

34) 농업지원을 위한 공동규정에 따른 통합관리통제시스템
35) 독일의 행정구역 단위 중 최소단위
36) 등록하는 경영체 주소로는 경영체 이름, 경영주 이름, 경영체의 법적 형태,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가 있음.
37) 독일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토지대장과 별도로 경지의 일반적 활용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경지대장이 있음. 필지 또한 소유필지와 구별되는 경작필지가 있음.

○ 토지식별번호의 구성 체계는 6자리의 문자와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 문자는 2자리의 국가코드(DE), 2자리의 주 코드, 농업 IACS를 의미하는 "LI"로 되어 있으며, 10자리 숫자는 주별 재량에 따라 임의방식으로 부여함.

그림 3-13. 독일 토지식별번호 구성 체계

				L	I										

<국가코드> <주 코드> <농업 IACS의미> <주별 재량의 임의방식으로 부여된 숫자>
자료: 김수석(2013)

②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현재 EU의 단일직불금 집행을 위한 InVeKoS와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음.
- 연방법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법에 따라 등록의 기준 및 내용이 규정되므로 전국적인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농업용 건축 건설을 허가하고, 세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
- 독일과 같이 EU의 단일직불제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를 운영하며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림녹지에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토지취득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③ 시사점 및 농업경영체 체계 변경의 필요성

○ EU의 경우 전산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을 통해 직불금 지급 등 정책 시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농지와 수급권, 농업경영주는 별도의 식별체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 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내에 경영주가 신청을 하면 경영주가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식별번호를 통해 확인하여 수급권이 부여됨.

○ 이처럼 농지에 부여되는 수급권 관리를 위해 농지 정보가 중요하므로 IACS시스템 내

에서 토지식별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농지원부를 통해 농지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에 차이가 있음.

- 농지원부의 경우 농업인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농업경영체의 활용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농업인들의 혼선과 행정상 비효율을 발생시키므로 농업경영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중인 우리나라의 직불시스템의 경우 토지대장·주민등록·친환경인증 등 25개의 공적 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단계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통합이 아닌 연계방식의 관리는 농업인의 등록정보 변경시 이전 정보의 이력을 남기지 않고 있어 시스템상으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부적합 농지 관리가 어려워져 직불 신청등록과 이행점검 등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EU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과 유사하게 농지원부를 비롯한 다양한 공적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행정상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정책시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로 사용하게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수부여 형식의 번호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독일에서는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확인수단이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번호에 기본적인 경영체 정보를 담아 농업경영체에 대한 확인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경영체를 식별하는 수단으로써 경영체 번호의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경영체 번호에 영농 시작연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 식별체계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이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농가 단위, 면적 직접지불금은 경영체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음.

2.2. 분해불가능 식별번호 사례(유형 3)[38]

가. 폴란드

38) 현재까지 농업분야에서 부분분해가능 식별번호 사례(유형 2)는 확인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함.

○ 2015년 기준, 폴란드 내에서 공식적인 농업경영체[39] 등록제도가 없음. 농업경영체가 농작업 이외 행정적 처리(세금 등)를 수행할 때 고유 식별 번호가 필요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Register of Agriculture Holdings, RGR)가 고안 및 제시되었음.

- European Commission(2015)에서는 농업경영체 도입을 위한 유사 제도(폴란드 주민등록번호, 기업등록제도 등)와의 연계, 관계 법령(EU 시민권, 폴란드 세금제도 등)과의 호환 등을 검토하였음.

2.3. 기타

○ 본 절에서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제 번호 역시 부여되지 않은 사례(농가고유번호)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사례를 정리함[40].

가. 축산업 허가제(구 축산업 등록제)[41]에서 활용되는 농가고유번호

○ 축산업 허가제란 우제류와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 50m^2이상일 경우 축산관련 기본 소양과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축산업을 허가하는 제도[42]로, 등록 농가에 등록번호와 별도로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함. 번호는 임의로 부여된 영어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한 5자리로 구성(예: “XA4PU”, “XA4S3” 등)됨.

○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였음.

○ 이처럼 번호가 부여되고 농가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한 결과 다양한 정책에 활용 및 정보교류가 가능해졌음.

-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이 가능해지며, 사양·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정보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가능

---

39) 현재 폴란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임. European Commission(2015)에서 제안한 농업경영체(Agriculture Holdings)의 정의는 Farmer(농장주/농부/농장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 농업 유관 활동(또는 관리)의 모든 구성 단위를 의미함.

40)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는 타분야로의 확장성이 우수함.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추후 연구과정에서 시사점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를 수록함.

41) 2004년부터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2012년 말부터 축산업 허가제로 확대 개편됨.

42) 위키피디아, 검색어: 축산업허가제

- 등록농가의 사육규모,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게 되어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실시가 가능해짐. 또한 등록농가에 대해 전자우편 등을 송부하여 실시간 정책홍보 가능
- 등록농가 전산 D/B 표준화를 통한 농가 간 정보교류 활성화 가능
-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을 확보하고,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정 사육조건 충족 시 친환경직불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를 통하여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그러나 축산 농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었음.
- 농가 규제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폐율 상향, 근본적인 분뇨 자원화 문제 등 사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됨(황형주, 2004).
- 무허가 축사 및 수입이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농가들이 등록을 외면/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함(김동욱, 2004).

○ 2010년 축산물이력제 검토 당시 농가 관리를 위해 기존 축산업 허가제에서 사용되던 농가고유번호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축산물이력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농장정보를 담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게 됨.

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번호임.

○ 이처럼 해당 등록번호가 도입된 배경에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도입 이전에는 국가 R&D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며, 참여인력의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할 수 없도록 여론의 압력을 높임. 이에 따라 연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차원의 참여인력의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써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도입함.

○ 도입 결과, 주로 연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 R&D사업의 정보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음.

-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국가R&D 사업 또는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참여인력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연구자의 정보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다.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식별체계)

○ UCI(Ubiquitous/Universal Content Identifier)란 식별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을 의미함.

○ 디지털콘텐츠의 생산·관리자들이 각자의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번호체계를 상호연계하여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
-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2003년부터 UCI가 표준 식별체계로서 보급·확산 되어 사용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UCI 도입 결과,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연계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었음.
-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를 손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 및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저작권 등록·관리, 콘텐츠의 유통,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등에 활용되어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연계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콘텐츠 식별체계를 제공함.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부여체계(안)

1. 검토배경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의 취지는 농가 및 농업회사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토대로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DB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농협에서는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비료, 농약, 일반자재, 농기계 등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량 배정 등의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진행시 단순히 등록여부 대조만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한 농가에서 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중복수혜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농업보조금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농업인이 아님에도 경영체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 도입 취지를 달성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즉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작성 및 적용의 목적은 첫째, 농업인에 적절한 정부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하며, 둘째, 부정수급 적발을 넘어서 명목상 농업인(정부보조를 받는)이 실질적 농업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셋째, 농촌의 공익적 가치 함양과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농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체계를 제안하고,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각종 농업경영체의 경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제1시안), 전문가 집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고유번호에 특성화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함(제2시안).

2.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제안

2.1. 현행 농업인번호

○ 농업경영체번호를 경영체 단위로 부여하여 정책사업 시 개인별로 정보 매칭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로 인해 별도의 식별번호를 경영체등록정보에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인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됨.

- 그러나 이는 '관리번호'로서 농업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번호이며, 번호체계의 영속성 및 가독성이 낮음.

○ 번호체계는 A-Z와 0-9 중에서 혼란방지를 위해 (O, L, I), (0,1)은 제외하고 총 6자리로 조합하여 부여함. 2019년 기준, 개인은 'A000000~YZZZ99'(79,061,400건), 법인은 'Z00000~ZZZZ99' (3,593,700건)으로 총 82,655,100개의 번호를 조합하여 활용 중임.

2.2.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초안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초안

○ 직불제 개편을 계기로 농업인 책임 하에 경영체 단위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시스템 및 농업인관리 방식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영체번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일련번호형식(10자리)으로 되어있어 사용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 경영체등록번호와 달리 등록번호에 의미를 부여하여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 **자동발급:** 번호발급의 자동화를 위해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 없는 번호체계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특정인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 차별적 요소(주민번호, 성별, 내외국인 구분)와 상시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정보(지역, 경영규모 등)는 최대한 배제함.

- **확장성:** 300만 이상의 충분한 번호생성 및 농업인번호로의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석이 편의해야 함.
- **자리수:**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감안하여 최대 12자리 이하로 고안되어야 함.

○ 고려사항을 반영한 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4-1. 농업경영체등록번호(안)

구분	등록연도	–	생년월일	–	고유번호	–	업종	–	변경회수
1	18		173		1안) 가나9(8) 2안) AC98 3안) ㄱㄴ98		1		0

주1: 구분은 숫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됨. 예를 들어, 1은 농업인, 2는 법인, 3은 협동조합, 4는 기타, 5는 2100년 농업인, 6은 2100년 법인 순임.
주2: 등록연도는 뒷자리만 표기함. 예를 들어, 2018→ 18로 표기함.
주3: 경영주생년 표기 방식은 두 번째 자리를 생략함. 예를 들어, 1973→173, 2018 → 218로 표기함.
주4: 고유번호(3~4자리 문자와 숫자)[43]는 세 가지 안이 존재하며,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 농업인번호 관리체계 및 현황

구분	조합방법	조합가능수	장점	단점
1안	· 한글자모(140)+숫자(10) 예) 가, 갸, 거, 겨, 교...	· 4자리:1,960천개 (140*140*10*10) · 3자리:215천개(140*140*10)	· 가장 많은 조합 · 한글사용	· 젊은층 비선호
2안	· 영어자모(l,i,o제외 23)+숫자(10)	· 53천개(23*23*10*10)	· 젊은층 친숙 · 세련됨	· 영어사용부담 · 농업인비선호
3안	· 한글자음(ㅇ제외 13)+숫자(10)	· 16천개(13*13*10)	-	· 시각적 불안

주5: 업종[44]: 1 경종, 2 축산, 3 시설, 4임업 5 기타
주6: 경영주변경회수: 경영주변경회수: 0 최초등록, 1 1회분리, 2 2회분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 12자리 중 일부만 조합하여 축약번호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예:18-가나98) 필요
- 업종의 겸업여부, 경영체 분리사유를 표시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축약번호와 기타(가족구분: 경영주0, 배우자1 등)조합으로 농업인번호 부여방안 검토 필요

43) 1년에 7~8만 신규등록과 말소가 발생하나, 최초 일제등록 수 감안이 필요함.
44) 기본은 경종이며 축산등록(소, 돼지 등)시 2번을 자동으로 부여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번호 초안

○ 경영체 단위로 경영체등록번호를 부여하더라도, 재정사업과의 매칭을 위해 가족인 개별 관리번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기는 하나, 정보보호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활용이 용이하고 경영체번호와 개인농업인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식별체계가 필요함.

○ 연계성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연계성:** 경영체등록번호와 연계하여 가족간 분리이력 등을 파악하기 용이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연계관리나 연계분석이 가능해야함.

○ 위 "가."에서 제시한 농업경영체등록번호(안)을 활용한 농업인번호(안)은 아래와 같음.

그림 4-2. 농업경영체번호(안)를 활용한 농업인번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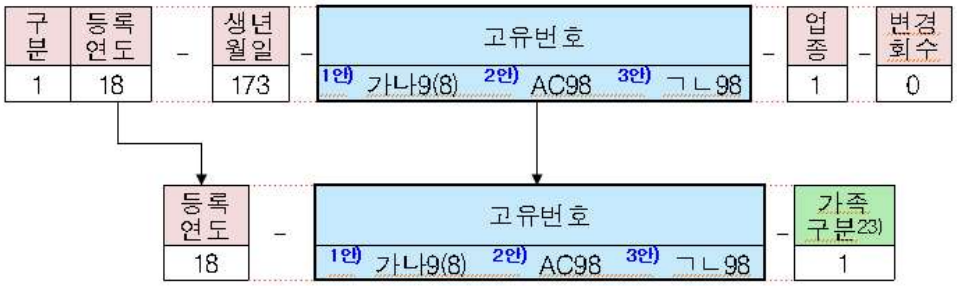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추가로 경영체등록번호의 축약형과 가족구분의 인식체계를 조합하여 개인 농업인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경영체 분리 등)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고유번호 3~4자리와 다른 항목(등록연도, 생년월일, 업종)을 조합하여 최소의 자리수로도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모색하여야 함.

2.3. 제1시안

○ 제1시안은 식별번호 생성방법 유형2로 농업 관련 농업인번호 및 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고유번호를 분리하는 방식임.
- 특징: 가장 직관적인 방법임. 모든 농업 유관인은 고유번호를 생성해야 함. 이들은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기타 등 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생성 및 부여받음.
- 참조: 차량 등록번호(40가 4587), 주민등록번호(13자리),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지역 정보), 농식품부 초기 모델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참조

가. 농업인번호

그림 4-3. 농업인번호 부여체계

8	6	-	가	나	3	5	9	0	-	0	0	1	X
(1)			(2)	(3)	(4)					(5)			(6)

(1) 두자리 숫자(86): 신청자 출생년도 뒷자리 ex: 1986 ⇨ 86

(2) 한자리 문자(가): ‘ㄱ’ 내국인 남성, ‘ㄴ’ 내국인 여성, ‘ㄷ’ 외국인 남성, ‘ㄹ’ 외국인 여성
‘ㅏ’는 신청자의 출생 세기 ㅏ(20s), ㅓ(21s), ㅗ(22s), ㅜ(23s), ㅡ(24s), ㅣ(25s), ㅑ(26s), ㅕ(27s), ㅛ(28s), ㅠ(29s)

(3) 한자리 문자(나): (문자) 선착순 부여 선호 번호 포화 시 자음, 모음 순 변화(차→거)
* DB화 고려 자음 10개(ㄱ~ㅊ)로 제한(모음은 원래 10개) - 이하 동일 기준 적용[45]

(4) 네자리 숫자(3590)[46]:
- 행정 효율화 고려 시 지역 번호[47]를 부여(상세 설명은 각주 참고)
- 농업인 편의 고려 시 신청자 선호하는 번호 네자리(등록 기간 경과 후 난수 생성)

(5) 세자리 숫자(001): 선착순 부여

(6) 한자리 숫자(X): 유효 번호[48](1, 3, 4번) 이번 예시에서는 7이 부여됨.

※ 고유번호는 영농활동을 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부여하며, 고유번호 소지자만 보조사업(면세유 포함) 신청

---

45) 자음을 10개로 한정시키면 DB 작성 시 숫자로 관리할 수 있음(각의 경우, ㄱ↔0&ㅏ↔0&ㄱ↔0 ⇨ 000). 그러나 고유번호를 숫자로 표기하면 번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46) **논의점**: 지역번호 부여 방식으로 할 경우 정보 수록량은 많아지나 정보 안정성은 하락함. 농업인이 타읍면동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쟁이 될 수 있음. 반면, 선호번호 방식 채택 시 농업인 편의가 증가하고 번호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정보 수록량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음.

47)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는 4,107개 읍면동 지역에 분포해 있음(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 실제 읍면동 수와 차이 있음). 지역 구분 번호를 네자리로 부여할 수 있음(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0354, 인천시 중구 홍인동 0483). 부록에 우리나라 등기관서별 번호가 있으며 이 역시 참고 가능함.

지역 구분	시도	읍면동	지역 구분	시도	읍면동
0	서울특별시	354	5	전라남도	392
	인천광역시	129		광주광역시	192
1	경기도	512		제주특별자치도	74
2	부산광역시	165	6	전라북도	329
	울산광역시	78	7	충청남도	244
3	경상남도	346		대전광역시	171
4	경상북도	481		세종특별자치시	21
	대구광역시	180	8	충청북도	147
			9	강원도	292

48) step1: 각 문・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함. 이때 ‘나’에서 자음만 숫자로 변환하며, 자음은 10개를 초과하지 못함(코딩 고려). step2: 합을 10으로 나누고 몫과 나머지를 구함. step3: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함.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함.

나.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고유번호

그림 4-4.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기타 고유번호 부여체계

0	4	-	4	9	5	9	-	거	거	0	0	1	X
(1)			(2)					(3)	(4)	(5)			(6)

주: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기타는 농업경영체 및 법인 또는 단체로 약칭
※ 농업인번호와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한글의 위치를 변경함.

(1) 두자리 숫자(04): 설립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신규 등록년도 뒷자리 ex: 2004 ⇨ 04
(2) 네자리 숫자(4959): 신청자 선호 번호 또는 지역 번호
(3) 한자리 문자(거): (자음) 조직 형태, (모음) 신규 등록한 세기
ㄱ: 농업경영체, ㅂ: 농업회사법인, ㅇ: 영농조합법인, ㅋ: 기타(6종류 추가 설정 가능)
ㅏ(20s), ㅓ(21s), ㅗ(22s), ㅜ(23s), ㅡ(24s), ㅣ(25s), ㅑ(26s), ㅕ(27s), ㅛ(28s), ㅠ(29s)
(4) 한자리 문자(거): 등록하려는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업종 구분
ㄱ: 경종, ㅊ: 축산, ㅅ: 시설, ㄹ: 임업, ㅋ: 기타
업종의 상세 분류[49](협의 필요) ㅏ: 곡물, ㅓ: 과수 ; ㅏ: 돼지, ㅓ: 소 등
(5) 세자리 숫자(001): 선착순 부여, 일정수(999)를 상회하면 (4)에 받침을 넣어 해결
(6) 한자리 숫자(X): 유효 번호((1), (2), (4), (5)번 활용)
※ 농업인번호 소지자는 농업경영체 및 법인에 대표자/공동대표자/참여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직불금 및 면세유 관련 보조 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어야 보조금 수령 획득 가능

---

(1)	8	6	2	3	5	9	0	0	0	1	더하기
(2)	1	2	1	2	1	2	1	2	1	2	
(1)*(2)	8	12	2	6	5	18	0	0	0	2	53

53의 나머지는 3, 10-3=7

분류		(4) 업종	
		개괄	상세
(2) 선호/지역	선호	가장 안정	
	지역		가장 상세

49) **논의점1**: 지역 번호 선택 시, 상세 업종을 포함하면 경영체번호만 보아도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농가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상세 업종이 변경될 경우, 경영체번호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함. 반면, 상세 업종 정보 미포함 시(업종 개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종/축산 생산 농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세 품목을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업종 변경(예: 경종→축산)은 신규 경영체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일관성과 상대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음. 이와 유사하게, 농업인 선호 번호+업종 개괄 방식은 업종 간 변경은 매우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됨. **이렇듯 4개 세부(안)의 정보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상충 관계(trade-off)가 있기 때문에 비교 감안 후 논의 및 합의 도출이 필요함.**

논의점2: 만약 상세 업종을 표기한다면 상세 분류 정의가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농림축산물은 41개 대분류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이에 관한 기술적 논의가 필요함.

다. 실제 생성 예시

○ 임모씨(1957년생, 평택배과수원)의 희망 번호가 4959라면, 57-가가4959-0111이 임모씨의 고유번호로 부여됨(지역 번호 기준, 57-가가1413-0116). 임모씨의 경영체는 04-4959-거거0014로 생성 및 등록되고(지역 번호 기준, 04-1428-거거0012) 임모씨가 경영주가 됨. 부인인 이모씨(1958년생, 참여)는 58-나나4959-3518로 고유번호가 생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임모씨의 배우자로 등록되며, 경영체 참여원으로 등록됨.

○ 임모씨가 2019년에 법인(축산법인-평택돼지목장)을 신설하려는 경우, 평택돼지목장의 고유번호(19-4959-버차0012)를 생성 및 등록하고, 임모씨는 대표자로 등록됨. 임모씨는 과수업 및 축산업 관련 보조사업을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함.

○ 2020년 평택배과수원의 대표자가 부인인 이모씨로 변경되었다면, 임모씨는 대표 변경을 신청하며, 평택배과수원의 경영체 번호는 유지됨. 2030년 이모 대표가 은퇴하여 평택배과수원이 두 자녀에게 상속되고, 2개의 농장이 되었을 시, “1인 기존 번호 승계 & 1인 신규 등록”도 가능하고, “2인 신규 등록”도 가능함.

라. 장단점 비교 분석

표 4-2.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번호 부여체계 장단점

구분	조합방법	조합 가능 수	장점	단점
고유	생년+국적/성별+선호번호+유효	(년/국적/성/선호or지역) 10만개	농업인 편의 번호 안정성	개인정보 추측
	생년+국적/성별+지역번호+유효		행정 효율성	정보 변경
단체	등록+선호+형태+업종무관+유효	(년/선호or지역/형태/업종) 9999개[50]	경영인 편의	개인정보 추측
	등록+지역+형태+업종무관+유효		행정 효율성	안정성 부족
	등록+선호+형태+업종포괄+유효		안정성	직관성 부족
	등록+지역+형태+업종상세+유효		명확성	정보 변경

자료: 필자 작성

○ 농업인번호,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고유번호를 구분/생성한다면 개인맞춤형 농정 달성이 가능하며, 각종 보조사업 시 개인고유번호로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별 수령 상황 식별이 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 및 정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50) 000번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2019년 12월 현재, 연령대별 최다 농업 경영체는 경북 포항시 북구, 60~64세의 2,072개임.즉, 2,072개 농가 모두 1959년에 경종/과수업에 종사하였다고 가정해도 번호 생성 가능함(지역번호 및 업종상세 기준으로 하면 59-4481-가건0723로 생성 가능).

- 따라서 농업인번호 시행 이전까지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고유번호를 먼저 부여 및 생성하고, 이후 소속원임을 증빙/증명되면, 소속원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단, 이러한 방식은 중복 번호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함.

마. 제1-1시안

○ 제1-1시안은 식별번호 생성방법 유형2로 농업경영체 및 법인 고유번호 내 소속원 번호 부여 방식

- 해당 시안은 현존 정보를 활용하여 단체 고유 번호를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음.
- 차량 등록번호(40가 4587), 주민등록번호(13자리), 독일의 농업 경영체 등록번호(지역정보), 농식품부 초기 모델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참조

그림 4-5. 농업경영체 및 법인 소속원 번호 부여체계

0	4	-	4	9	5	9	-	거	거	0	0	1	X	-	0	0
(1)			(2)					(3)	(4)	(5)			(6)		(7)	

(1) (2) (3) (4) (5) (6) 상기 설명 참조

(7) 두자리 이상(00): 농업경영체의 경우, 대표자 혈족(민법 상 상속 4순위까지)까지 신청할 수 있음(증빙 서류 제출). 법인의 경우, 출자자 등 법인 재산상 유관인만 등록할 수 있음.

※ 04-4959-거거001X가 어떤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고유 번호임. 농업경영체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번호를 생성해야 하며, 이전 번호는 폐기됨. 법인은 폐업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 유지됨.

※ 이 번호 체계에서는 중복 번호 및 예외자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단체 종류를 A, B, C, D라고 지칭할 때, 중복의 경우(예, 2개) 6종류의 조합과 예외의 경우, AUBUCUD의 여집합임(예시, 농업경영체 및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참여자, 여러 경영체 및 법인과 무관한 단순 농업임노동자 등). 해당 농업인은 초기 번호 생성 시에도 고유번호 생성 방식을 적용하여 별도 관리해야 함.

※ 이렇듯 농업경영체 중심의 번호 체계는 **중복자와 예외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함.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인 고유 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

○ 상기 제시된 농업인번호는 매우 제한적인 개인정보만 수록되어 있어 코드로 기능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번호의 취지와 목표를 온전히 달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고유 번호 이후에 특성화 번호를 생성한다면 농정 집행 효율화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51]

2.5. 제2시안

○ 제2시안은 유형1로 분류되며, 고유번호 뒤에 붙어 각 개별인의 특성을 숫자화 반영한 것임.

- 농정 업무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유번호 뒤에 특성화 정보(번호)를 수록하며, 고유번호-특성화번호 순서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및 공공에 제공됨.

※ 특성화 번호의 수록 정보 및 접근 가능자의 범위는 협의·결정해야 함. 그러나 유효번호는 필요하지 않음.

- 참조가능한 사례는 VIN 번호(차대번호), HS 코드임.

가. 개인 및 고유번호에 포함되는 특성화 정보

그림 4-6. 개인 특성화 정보 부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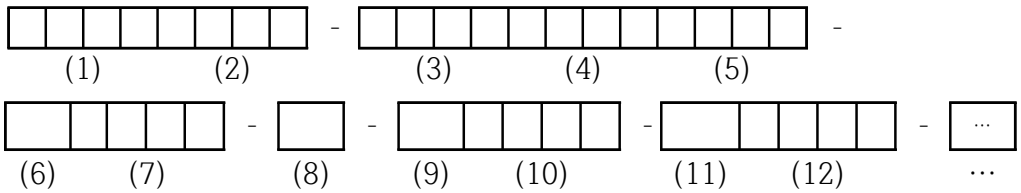

영농 시작 연도(1) 및 당시 거주지(2), 작성년도(3)의 거주지(4), 실경작 면적(ha)(5), 업종 대분류(6) 생산 작물 상세 분류(7), 전년도 보조금 수령 여부(8), 종류 및 수령액(백만원)(9, 10), 11, 12 및 이하도 이와 같음.

※ 개인번호에는 작물 생산량을 기록하지 않으며, 중복집계 방지를 위한 것임.

그림 4-7. 농업경영체 및 법인의 특성화 정보 부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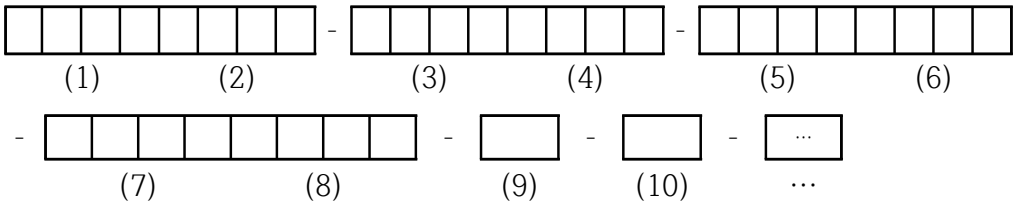

* 단체 특성화 번호는 제1시안 시행 기준으로 서술함.

작성년도(1), 경영체 위치(2), 대표 생산 품목의 종류(3) 및 생산량(4), 주요 생산 품목1의 종류(5) 및 생산량(6), 주요 생산 품목2의 종류(7) 및 생산량(8), 대표자 및 개인번호(9) 대표자2 또는 소속원1의 개인번호 이하(…) 실제 소속원 수 대로 생성

51) 직불금 및 면세유는 국가 세금 및 자금이 투입되거나 운영되는 지원 사업임. 수급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담보가 중요함.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농 관련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실제 생성 예시

○ 앞서 임모씨의 농업인번호는 57-가가4959-0111(선호)임. 이 번호 뒤에 특성화 번호가 부여됨.

- 임모씨는 2004년부터 영농을 시작, 당시 거주지는 평택시 세교동, 작성년도(2019년)의 거주지는 2019년이며, 현재 경작면적은 1.0ha이며, 업종은 경종-과수업, 전년도 보조금은 받지 않았음. 따라서 20041420-201914280010-120602-0임.

○ 임모씨가 2019년도에 운영하는 평택배농장의 농업경영체 고유번호는 04-4959-거거0014(선호)임.

- 평택배농장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하며, 대표 생산 품목은 배이며 1.3톤을 생산함. 기타 생산품목은 없음. 대표자는 임모씨, 소속원1은 이모씨임. 따라서 201914-06020012-0-0-57-가가4959-0111-58-나나4959-3518임.

2.6. 논의 사항

○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 토론을 통하여 논의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지 모호하지만, 만약 개선해야 한다면 번호 체계를 단순화하고, 의미 부여를 최소화할 것(예시: '거거' 방식은 지양)
- 부정 수급 방지는 번호 부여를 통해 달성하기 어려우며 시스템 설계가 필요, 그러나 수급 이력 기록 및 분석을 위한 농업인번호 필요
- 번호 길이는 적절할 것(8~12자리), 한글은 코딩 생성 시 오류 발생 가능, 유효번호는 과거 방식으로 재검토 요망, 변동 가능 요소 배제 필요
- 주요 결과를 반영하면, 현행 농업경영체번호의 변환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논리를 구축해야 하고,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농업경영체번호와 농업인번호를 모두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

표 4-3.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 정리

논점	의견 1	의견 2
번호체계	○ 번호체계 간소화 필요 - 번호에 지역번호[52], 경종 등의 정보가 포함되면 정보 변경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성부여 최소화 필요 - 6자리 이상은 외우기 어려움.	○ 어느 정도의 특성부여 필요 - 동태파악을 위한 정보부여 필요 - 농업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교육적 의미가 있으므로 의미부여는 필요함. - 외부에 알리는 번호는 어느 정도의 의미와 패턴이 필요 ○ 고유성을 가질 필요

		- 대외활용, 중요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영체 번호만의 고유성(identity)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번호의 활용 빈도가 낮아 쉬운 체계로 만들더라도 사용자가 외우기는 어려움. 따라서 대외활용을 고려하여 번호를 구성하여야 함.
관리단위	○ 농업인 단위의 농업인번호 연구 필요 - 보조금 수령 이력 관리, 사업 효과 분석 등을 위해 어느 경영체에 어느 농업인이 속하는지 관리가 필요함.	○ 경영체 단위의 관리 필요 - 농업인 개인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수령인이 분할되어 지급 한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영체 단위의 관리가 필요함.
부정수급 방지	○ 번호체계만으로 부정수급방지 불가능 - 번호체계는 보조금의 실경작자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번호에 이력 관리체계 삽입은 어려움. - 부정수급 방지는 번호체계가 아닌 사업시스템 구축으로 접근 필요	

자료: 필자 작성

2.7. 제3시안

○ 기존 제안 모델을 수정·단순화하면 농업경영체번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농업인번호는 주민번호를 대체하고 농업인의 소속을 명확하기 위하여 도입

-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때문에 번호는 가변 요소는 활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출생시기(년도) 및 성별과 등록 년도를 선택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번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농업인번호에 각종 정보 및 이력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림 4-8. 단순화된 농업인번호(연구진 선호 순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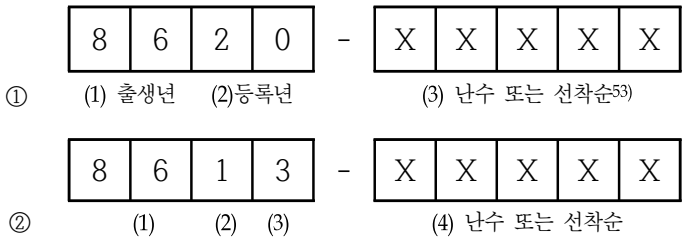

자료: 필자작성

52) 주민등록번호에서 시도 번호, 읍면동 번호로 지역을 나타내는 8~11번째 자리 번호는 지역 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난수 번호로 개편될 예정임.

53)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6자리로 조정 가능

그림 4-9. 단순화된 농업경영체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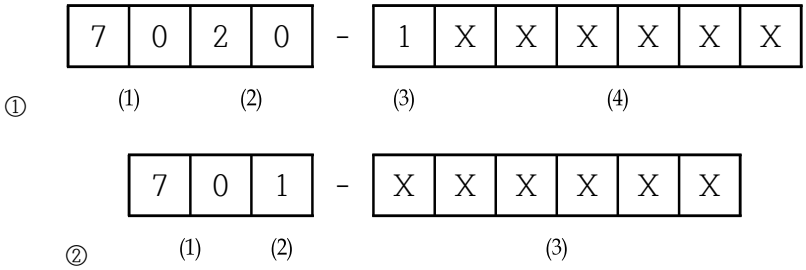

(1) 농업경영체의 영농시작년도 및 등록년도 조합 혹은 단순히 영농시작년도(1970)[54]
(2) 1: 농업경영체, 2: 농업회사법인, 3: 영농조합법인, 9:기타
(3) 1: 경영주, 2: 경영주 외 농업인, 3: 준농업인
(4) 난수 또는 선착순 부여
매년 신규 등록 농업경영체가 100만 개 미만[55]인 것을 고려하여 5자리 설정
자료: 필자 작성

○ 위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에 농업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번호를 추가하는 것을 별도로 고려해볼 수 있음.

- 현행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있음. 그러나 농업인번호 도입 시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인처럼 활동하는 그룹도 존재함.
- 따라서 이들을 농업인의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준농업인"으로 농업인DB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이때 '1: 경영주 2: 경영주 외 농업인 3: 준농업인'과 같은 번호체계로 모델에 도입할 수 있음.
- 만약, 정책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면 공동경영주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번호 예: 4).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 1번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농업경영체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성됨. 농업경영체에 등록 가능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54) 이때 영농 시작년도로 설정하면 경영주가 작성한 정보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재 경영주의 나이보다 영농 시작년도가 오래된 경우임(부모 농업 승계). 그러나 현재 등록된 어떤 경영체가 후대에 계승되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예를 들어 2030년이 현재라고 가정하면, 2008년에 등록된 경영체를 2009년생 농업인이 승계한 경우를 들 수 있음. 따라서 정보 불명확성의 문제는 초기 제도 시행의 문제점으로 염두해두고 실태 조사 및 수정 등의 보완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5) 2015년 1,589,795 → 2016년 1,618,354 → 2017년 1,644,899 → 2018년 1,658,627

표 4-4.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분류	등록기준
경영주	○ 경영체등록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함.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③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다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의 자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농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농업여부의 확인이 불가한 단순 농산물판매상, 유통인 등은 경영체 등록에서 제외 <예외인정> (1)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 * 콩나물재배는 예전부터 농업의 범위에 포함 ④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제3호에 따른 가족농업인을 등록
경영주 외 농업인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임.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함.)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이나 제61조에 따른 준농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경영주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농업종사자인 가족 또는 경영주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가족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 -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세 이상인 자만 해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인처럼 활동하며, 위에서 "준농업인"으로 정의한 그룹은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기준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속해있을 수 있음.

표 4-5. 준농업인 등록기준

분류	등록기준
준 농업인	○ 준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해있을 수 있음. - 농산물 판매상, 유통인 등과 같이 농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경영체등록 기준이 되는 농지 면적,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미만 일정 수준을 충족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자료: 필자 작성

○ 이렇게 설정된 농업인번호는 즉각적으로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56)]

- 과학기술인등록번호의 DB에는 개인의 한글이름, 영문명, 한문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성별, 국적,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주소, 소속기관우편번호, 부서명, 직위가 담겨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 DB에도 한글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국적 등의 정보가 있어 번호 생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56) 초기 농업인번호 시행 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제도 정착 이후에는 신청 방식으로 전환

3. 발급번호부여 방안

○ 현재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지 혹은 농업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을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인번호 발급 역시 동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이때 전산상 부여 및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음.

○ 우선, 초기 번호발급은 농업인의 혼란과 전산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괄로 부여함. 이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던 기존의 농업인이 농업인번호를 신청하면 이때 부여되어 있던 번호를 실제로 발급해줌. 이후 신규등록자에게는 추가로 번호를 부여·발급해줌.

○ 이때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인번호 도입을 인지시킴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임. 번호부여 및 발급은 농관원이 담당하며, 농업인번호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므로 농관원은 경영체등록 확인서와 증명서에 농업인번호를 표시하여 발급해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재 농업경영체 신청서에는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도입 초기에는 농업인 식별 및 농업인들의 인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와 농업인번호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농업인번호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인 만큼 향후 농업인번호가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음.

- 또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에도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음.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경영·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다른 기관 또는 제 3자에게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농업인번호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요약 및 소결

○ 본 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체계를 재검토 하고, 연계사업 시행 시 개인별 정보 매칭 및 추적을 통한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업인번호 도입을 검토하였음.

- 농업인번호의 경우 현재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번호체계의 영속성 고려가 다소 미흡하며, 가독성이 낮음.
- 따라서 외부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위의 단점을 보완한 농업인번호 모델과 함께 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번호 모델을 제안함.
- 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모델로써 제1시안, 1-1시안, 2시안 및 단순화된 시안으로 총 4가지를 제안함.

○ 제1시안은 농업 관련 농업인번호 및 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고유번호를 분리하는 방식임. 모든 농업 유관인은 고유번호를 생성해야 하며, 농업인번호 소지자만 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기타 등 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생성 및 부여받음.
- 제1-1시안은 농업경영체 및 법인 고유번호 내에 소속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임.

○ 제2시안은 고유번호 뒤에 특성화 정보를 수록하여 고유번호-특성화번호 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임.

○ 이후 전문가 집단 토론을 통해 위 시안들을 검토하고, 번호부여 체계에 대해 논의함. 그 결과 동태파악 및 농업인 정체성 부여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특성부여 및 고유성을 가지도록 하되, 번호체계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정리됨.
-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여 단순화된 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모델을 제안함.
- 이는 영농시작년도 및 등록년도, 경영체법인 여부, 농업인지위, 성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되 간소화된 형태의 모델임.

○ 한편, 농업경영체번호의 경우 현재 오랜 기간 여러 기관에서 전산화되어 활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번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행정비용 지출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실무담당자 역시 농업경영체번호의 변경은 어려우며 당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농업경영체번호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음.

○ 위에서 제시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시안의 조합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조합을 찾고 각 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함.
- 2안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체계가 복잡하여 실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따라서 2안을 제외하고, 현행 유지, 1안, 3안을 적절히 조합함.
- 다음으로 가장 선호되는 조합은 농업경영체는 현행을 유지하고, 농업인번호는 단순화

된 3안을 적용하는 것임.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함. 또한 가독성이 높고 직관적이며, 가장 필요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번호를 도입하는 방안임.

○ 만약 기존의 농업경영체번호체계를 변경하게 된다면, 3안 혹은 1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3안의 경우 가독성과 직관성이 높고 농업인의 지위를 고려하며, 영농시작년도 등 필요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음. 1안은 직관적이며, 번호자체에 등록년도, 업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행정처리 시 번호만으로 정보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둘 중 어느 시안이 적절할 것인지는 향후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며, 사용자인 농업인의 의사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6.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장단점 비교

선호순	구분	장점	단점
1	**경영체 - 현행** **농업인 - 3안**	-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약	- 번호의 중요성에 비해 체계 부족 - 심미성 부족
		- 높은 가독성 - 직관적임 - 농업인 지위 고려	- 기존 농업경영체번호와 비교하여 차별성 부족
2	**경영체 - 3안** **농업인 - 3안**	- 높은 가독성 - 농업인 지위 고려 - 영농시작년도 반영으로 농업인의 정체성 및 인지도 함양 가능	- 농업경영체 번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 높은 가독성 - 직관적임 - 농업인 지위 고려	- 기존 농업경영체번호와 비교하여 차별성 부족
3	**경영체 - 1안** **농업인 - 1안**	- 직관적임 - 농업인번호와 연계 - 등록년도, 업종 등 정보 반영	- 농업경영체 번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 가변요소 포함 - 한글 포함으로 전산상 처리 어려움 존재
		- 직관적임 - 농업경영체번호와 연계 - 출생년도, 외국인 여부, 성별 등 다양한 정보 반영	- 한글 포함으로 전산상 처리 어려움 존재

자료: 필자 작성

제5장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 도입의 법적 과제

○ 본 장에서는 농업인번호[57]의 도입 및 대내외 활용의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등록번호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본 후 농업인번호 구축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검토 결과 농업인번호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함. 이때 개인정보보호법도 함께 고려하여 시안을 제시함.
- 또한, 실제 농업인번호 구축방법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시행 로드맵을 제시함.

1. 현황 및 과제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농업인 보조사업 수행 시 재정사업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경영체법)에 따름.
-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기준 명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농업경영체 관련 일반 현황(경영주 정보, 참여 농업인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재배(직불금·보조금 포함),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 규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급대상자도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57) 용어 규정 및 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업, 농업, 어업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 농업과 어업을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절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농어업인번호, 농업인번호, 어업인번호를 모두 사용하였음. 만약 농업인번호 체계가 도입된다면, 이에 상응한 어업인번호 체계의 도입 역시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절의 법률 조문 부분에서 사용된 '농어업인번호'는 농업 및 어업인 번호를 통칭한 개념이며, '농업인번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 부처인 경우 사용하였음. 본문 내 설명에서는 '농업인번호'가 주로 사용되었음.

○ 현재 경영체 등록 시에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보조사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하여 생년월일을 통하여 수령자를 확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보조사업과 수령자 간에 매칭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또한, 이력 추적 및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자 확인도 다소 미흡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보조금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하나, 현 체계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시에는 부정수급자 검증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농업부문의 대표적 인식체계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개선과 함께 농업인 인식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경영체등록번호는 등록신청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고유한 식별번호로서의 역할수행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 또한, 농정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정책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식별번호로서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번호 부여체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입된 새로운 식별번호를 농정분야에서 일반적 인식체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별번호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가 필요함.

○ 이에 검토가 필요한 부문을 크게 '① 개인식별코드 구축의 법적 근거마련(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포함) ② 농업인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안) 연구'로 나누어 법적 검토를 시행하고자 함.

2. 개인식별코드 구축의 법적 근거마련

○ 본 절에서는 농업인번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농업인번호 생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실제 입법방향 및 시안을 제시함.

2.1. 법적 근거의 필요성 검토

2.1.1 법적 근거의 필요성 판단기준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임. 이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기본권보장 원리에서 도출됨.

-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한유보가 있음.

○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다음 학설이 있으며, 다수설과 판례는 본질적 사항 유보설에 가까움.

- 침익적 유보설 : 침익적 행정작용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 신침해유보설 : 침익적 행정작용과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침익적 행정작용도 법률유보가 필요함.
- 급부행정 유보설 : 침익적 행정작용 외에 급부행정작용도 법률유보가 필요함
- 본질적 사항 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 :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규율해야 함.
- 전부유보설 : 행정의 모든 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 법률에 규정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는데, 헌법상 대표적인 조항은 제37조제2항이며 그밖에 헌법상 개별조문에서도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명시한 경우가 많음(부록 1 참고).

-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라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의미가 문제가 됨. 공법학자들은 이를 법률유보의 문제로 이해함.

○ 오늘날 통설은 본질적 사항 유보설(중요사항 유보설)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라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권과 무관한 사항 또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2.1.2 농업인번호 법적 근거의 필요성 검토

가. 우리나라 등록번호 입법례

○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객체를 관리하기 위해 번호 부여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행정객체를 관리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등록번호들은 해당 등록번호를 도입한 법률에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등록번호 부여는 그 자체로는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그 등록번호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를 규정한 법률에서 등록번호까지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등록번호 부여방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서 특별히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도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음.

○ 다음에서 우리나라 등록번호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법적 근거 명시 여부 및 규정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58].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한 4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만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서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도입근거가 명시되어 있음[59].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에서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필요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외국인등록번호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서 "⑤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에서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별 · 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등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방법의 대략을 정하고 있음.

---

58) 언급된 등록번호의 입법례 및 번호부여 체계는 부록 2.에 첨부하였음.

59) 주민등록법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부여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은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며, 행정목적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률상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유용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주민등록번호가 국민 개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서 이를 함부로 취급할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헌법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이는 파생적인 문제로서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규정한 이유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에 비하여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 자동차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등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 부여)**를 통해 자동차 신규등록시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여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통령령(자동차등록령)에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번호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데, 이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된 번호라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나머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권에 기재된 여권번호는 여권법에 여권번호라는 용어만 나올 뿐 도입근거를 법률로 정한 것은 아님.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해당 법률에 번호 부여에 관한 언급이 없음.

- 사업자등록번호는 원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로 도입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용역발주시 자격요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8조(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에서 간단한 부여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60]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운전면허번호는 「도로교통법」 제 80조를 인용하고 있지만[61] 같은 조에서는 면허번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위 등록번호 사례에서 모든 등록번호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법률 규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등록번호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식, 행정작용의 형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농업인번호의 경우에도 목적과 방식, 행정작용 형식과 성격 등과 함께 법적 근거의 필요성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60)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6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나. 농업인번호 법적 근거의 필요성 검토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내지 농업인번호를 법률유보 이론과 관련시켜 볼 때, 농업인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고유식별정보 내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62]를 엄격히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규제를 피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는 적용을 받게 되고, 이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경영체법에서 식별번호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에 비추어 경영체법의 입법에 있어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도 법률유보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경영체법에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내지 농업인번호를 규정하고 이를 농업인 등의 식별번호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일반 개인정보[6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고유식별번호 내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따로 규정한 조문들의 제약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제한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는 정보임. 따라서 농업인번호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규정한 조문들의 제약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임.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열거된 것에 한정함[64].

○ 경영체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일반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

6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

63)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6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자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두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는 없고 식별번호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앞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농업인번호 도입은 법률유보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여러 법령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법률에 도입 근거를 명시함이 타당할 것임.

○ 농업인번호 등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농업인번호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별도의 식별번호 창설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음.

○ 농업인번호를 도입할 경우 이를 기본권 차원 내지 법률유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러나 농업인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일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며 따라서 농업인번호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을 벗어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65]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체법에서 농업인번호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이 필요하면 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을 벗어나야 할 것임.

○ 농업인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창설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범주에 추가해서는 안 될 것임.

- 농정 관련 다른 법률에서 이 식별번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체법에서 식별번호 도입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식별번호의 도입근거조문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긴요하다고 봄.

2.1.3. 요약

○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객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지만 운전면허번호의 경우처럼 고유식별정보임에도 번호 부여에 법적 근거를 두

65)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등록번호들은 해당 등록번호를 도입한 법률에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용의 편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임.

○ 그러나 등록번호 부여방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서 특별히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도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음.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내지 농업인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내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 법적 규제는 피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 규제만 받으면 됨.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에 비추어 경영체법의 입법에 있어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도 법률유보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경영체법에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내지 농업인번호를 규정하고 이를 농업인 등의 식별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일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고유식별정보 내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따로 규정한 조문들의 제약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임.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식별번호를 그 조문에 추가하지 않는 한 고유식별정보가 아님.

○ 경영체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반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두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는 없고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경영체법에서 식별번호의 수집과 활용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는 있음.

○ 농업인번호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식별번호 창설의 의미를 반감시키게 될 것임.

○ 주민등록법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부여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은 기본권과 직

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며 행정목적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률상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유용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 주민등록번호가 국민 개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서 이를 함부로 취급할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헌법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이는 파생적인 문제로서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중 중요성이 커진 주민등록번호를 제24조의2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보호를 가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따라서 식별번호의 창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도 경영체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음.

2.2. 입법 방향 및 시안

2.2.1. 입법 방향

○ 농업인번호의 부여는 식별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농업인 등의 의사에 맡겨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형사처벌로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음.

- 보조금의 지급 등 수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므로 등록의 실효성 확보는 가능
- 등록을 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별 차이가 없음.

○ 입법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너무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경우 법률의 다른 조문들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법률에서는 핵심사항만 정하고 하위법령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 하위법령에서 번호부여방식을 상세히 규정할 경우는 물론 행정규칙(고시 예규 등)로 정할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므로[66] 일반인들이 번호부여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농업인번호를 통해 농업인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획득하고 무단 도용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6)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3(훈령 · 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 예규 · 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 · 규칙 · 지시 · 지침 · 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 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 · 유지 · 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 예규등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 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 · 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 · 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는 하위법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어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지 않는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2020년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에서는 종전의 방식을 폐기하고 뒷자리는 임의구성으로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2016년 새로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서는 변경후 부여하는 번호는 임의부여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입법화에서는 농업인번호 도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책결정에 따르도록 함.
- 번호 구성방법에는 1) 완전히 분해 가능한 구성 2) 부분적 분해 가능한 구성 3) 분해 불가능한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책결정에서는 분해 불가능한 구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분해가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신청순서에 따른 부여가 3자리로 구성되는 등 생성체계의 인지로 인한 번호 유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농업인의 성별이나 내국인 여부, 등록지역 등에 관한 정보는 불법 접근으로 인한 누출가능성은 있지만 위험이 낮아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

2.2.2 법률 규정사항

가. 경영체법의 현행 관련 규정([첨부 3] 참조)

○ 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및 변경등록하도록 함(법 제4조 : 어업과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

○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 농지 · 축사 · 임야 ·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
- 1)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도 등록사항에 포함시키고 있음/아울러 세대원에 관한 정보도 포함/농지면적과 재배품목, 지목, 사육가축 및 곤충, 임야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만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지는 않음.
- 2)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요 사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3) 공통사항으로서 직불금 등 보조금과 가공 및 유통 겸영시 관련 정보도 포함시킴.

○ 등록 및 변경등록 정보는 3년간의 유효기간 부여

○ 등록절차(시행규칙 제3조)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용), 별지 제1호의2 서식(임업 경영 농업인용), 별지 제2호 서식(농업법인용), 별지 제2호의2 서식(임업 경영 법인용)의 등록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읍장 면장 동장에게 제출

- 위 각 별지 서식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짐. 시행규칙 본칙에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번호부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부여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은 농어업경영체가 하지만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다른 기관의 자료협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 자진 수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은 없고 직권정정 및 말소로 대응(법 제6조의2) : 직권말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규정(법 제6조의3)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법 제7조) : 위반시 형사처벌(법 제31조)

○ 공동경영체 지정제도 운영(법 제6장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27조의3).

- 지정받은 법인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법 제27조의4) : 지정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으므로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정시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자동등록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등록한 정보의 분석 가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 · 가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조제6항).

- 개인정보의 분석 가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함은 체계정합성 위배(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는 포괄위임만 두었는데 이러한 분석 가공은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시행규칙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둠이 바람직함.

- 시행령 제3조에서 자료의 제공방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정보 측에서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정보 측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정합성에도 위배됨.

나. 시안[67]

○ 부록 6의 주민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음의 시안과 같이 규정함.

<경영체법의 규정사항>

제6조의4(농어업인번호 등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농업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조문 위치는 소관 대상이 아닌 어민을 제외한 것을 감안하여 농어업경영정보등록과 관련된 조문들의 맨 마지막에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되, 대통령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관리원장은 1급기관으로서 법률에서 인용 불가)에게 위임 가능(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주민등록번호 생성체계에서도 지역적 요소가 가미된 점 등에 비추어 시장 군수가 부여해도 되지만, 농업인번호는 전국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실제 집행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제6조의5(농어업경영정보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 · 가공할 수 있다.

※ 해설 : 현행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을 법률로 격상/ 개인정보의 분석 가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함은 체계정합

67) 주민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정함.

성 위배(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는 포괄위임만 두었는데 이러한 분석 가공은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가능

제6조의6(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해설 : 시행규칙 제5조를 법률로 격상/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둠이 바람직함/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체계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법률 격상이 필요함.

<경영체법 시행령 규정사항>

제3조의2(농어업인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농업인번호는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따로 부여하되, 1인 또는 1 법인 · 단체별로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 · 단체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번호를 부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인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해설 : 개인 단체별 별도 부여 원칙과 1인(단체) 1번호 원칙 및 번호의 중복 재사용 방지를 규정(중복 재사용은 사후관리에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명시)/관리대장 등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하므로 부령에 재위임/전산적 방식에 의한 부여 허용(중복체크 등)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신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3의4. 법 제6조의4에 따른 농업인번호의 부여

<경영체법 시행규칙 규정사항>

현행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7조의2(농어업인번호의 관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인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농업인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번호 부여의 규범적·법리적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의 반영
1) 번호 생성 및 등록 방식에 관한 원리 : 등록은 현행 경영체법에 따르되, 번호 부여를 법령에 명시하고 번호 생성방법은 하위 고시에 반영
2) 번호 생성 및 등록 대상에 관한 범위 및 한계 : 번호 생성에 필요한 사항이 경영체법상 등록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보충(농업법인의 경우 세부품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등록사항으로 해결 가능)

3) 등록 과정 시 필요한 양식 : 번호생성체계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출생연도 등)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신청서 기재사항에 반영(현행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4) 불법 접근에 대한 보호 : 번호생성체계에서 등록신청자가 원하는 임의의 숫자가 3개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법 접근은 사실상 봉쇄 가능/시스템 자체에 접근하는 것은 IT 기술상의 문제이지만 하위 고시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를 제고 5) 수집 정보의 범위 : 생성체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통하여 수집(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 등의 기재사항으로 해결) 6) 번호 기록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에서 별도 대장 관리 의무 규정 7) 등록 시 정보 접근에 관한 규정 : 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는 별도 고려 불필요

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농정 수행을 위하여 농업인번호를 통한 특정 정책의 대상자 식별 내지 확인을 하려면 농업인번호의 수집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배제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경영체법에 예외 요건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 경영체법에서 농업인번호의 부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농업인정보의 다른 행정기관 제공 등과 관련하여 수집목적과 활용범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번호를 고유식별정보의 범주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일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1절의 각 조문에서 적용예외로 인정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경영체법에서 일괄하여 마련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법 제6조의4항에 추가 방안을 고려해야 함. 추가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농식품부 업무에 활용되는 범위를 특정해줄 수 있음.

<신설>
제6조의4(농어업인번호 등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농업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1. 관련 농업정책자료의 연계 및 분석 2.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3.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③ 농업인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번호에 포함시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하면 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안된 농업인번호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음.

2.2.3 경영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신구조문비교

○ 앞서 제시한 경영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과 기존 법령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가. 법률

표 5-1. 법률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개정취지
[신설]	제6조의4(농어업인번호 등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이하 "농업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1. 관련 농업정책자료의 연계 및 분석 2.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3.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③ 농업인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위치는 어민은 제외된 사항이란 점을 감안하여 농어업경영정보등록과 관련된 조문들의 맨 마지막에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되, 대통령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관리원장은 1급기관으로서 법률에서 인용 불가)에게 위임 가능(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주민등록번호 생성체계에서도 지역적 요소가 가미된 점 등에 비추어 시장 군수가 부여해도 되지만, 농업인번호는 전국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실제 집행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제2항의 취지 : 농정 수행을 위하여 농업인번호를 통한 특정 정책의 대상자 식별 내지 확인을 하려면 농업인번호의 수집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배제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경영체법에 예외 요건을 마련 : 경영체법에서 농업인번호의 부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농업인정보의 다른 행정기관 제공 등과 관련하여 수집목적과 활용범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1절의 각 조문에서 적용예외로 인정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경영체법에서 일괄하여 마련하도록 함
[신설]	제6조의5(농어업경영정보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현행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을 법률로 격상 - 개인정보의 분석 가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근거를 법률

	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함은 체계정합성 위배(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는 포괄위임만 두었는데 이러한 분석 가공은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가능
[신설]	제6조의6(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조를 법률로 격상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둠이 바람직함 -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체계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법률 격상이 필요함

자료: 필자 작성

나. 시행령

표 5-2. 시행령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개정취지
[신설]	**제3조의2(농어업인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농업인번호는 농업인 개인별 및 법인이나 단체별로 따로 부여하되, 1인 또는 1 법인·단체별로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단체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번호를 부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인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개인 단체별 별도 부여 원칙과 1인(단체) 1번호 원칙 및 번호의 중복 재사용 방지를 규정(중복 재사용은 사후관리에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명시) - 관리대장 등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하므로 부령에 재위임 - 전산적 방식에 의한 부여 허용(중복체크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1급기관은 법률에서 바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임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3의3. 4.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1.-3의3. 4. (현행과 같음) 3의4. 법 제6조의4에 따른 농업인번호의 부여 ②③ (현행과 같음)	

자료: 필자 작성

다. 시행규칙

표 5-3. 시행규칙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정안	개정취지
[신설]	제7조의2(농어업인번호의 관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인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농업인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관련서식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② (생략)	제7조의3(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자료: 필자 작성

3. 코드 구축방법에 관한 고시안 마련

○ 고시안 마련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있는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규정하는 방법과 법령 규정사항은 제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따름.

<농어업인번호 등 식별번호의 체계 및 부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른 농어업인번호 등 식별번호의 체계와 부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구성) 농어업인번호의 체계는 별표에 따른 방법으로 구성한다.

제3조(부여방식) ① 농업인번호는 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부여한다. ② 농업인번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발급을 통하여 부여한다. 제4조(전산처리) 농업인번호는 법 제6조의6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적 방법으로 부여하며, 같은 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함으로써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제5조(불법접근 방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침해 등을 방지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록 정보 이용권한의 부여, 권한이 없는 자의 수록 정보 이용 제한 등의 관리적 조치 2. 방화벽 설치, 위·변조 방지장치의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 3. 그 밖에 수록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이에 적용될 농업인번호 체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 시안 중 최종 채택된 체계로 함.)

3.3. 입법 추진 로드맵

3.3.1. 입법대상

○ 입법 추진 로드맵 제시에 앞서 각 법령 종별로 입법이 필요한 입법대상을 살펴봄. 각 법령 종별 입법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5-4. 각 법령 종별 입법대상

법령	입법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경영체법)	- 제6조의4(농어업인번호 등의 부여) 신설 : 농업인번호 부여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제6조의5(농어업 경영정보의 가공 등) 신설 : 현행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을 법률로 격상 - 제6조의6(농어업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신설 : 현행 시행규칙 제5조를 법률로 격상
경영체법 시행령	- 제3조의2(농어업인번호의 부여)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농업인번호 관리 부령에 위임/농업인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 등 고시에 위임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제3호의4 신설
경영체법 시행규칙	- 제7조의2(농어업인번호의 관리 등) 신설 : 시행령의 위임 사항 - 별지 제8호의2 서식 신설
가칭 농업인번호 등 농업인번호의 체계 및 부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대통령령 위임사항

자료: 필자 작성

3.3.2. 각 법령 종별 입법절차

○ 위의 입법대상별 입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경영체법(법률)의 경우 정부제안의 경우와 의원제안의 경우 입법절차가 일부 상이하여 각각의 절차를 따로 살펴봄. 또한, 절차 진행시 각 종별로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진행하여야 함.

표 5-5. 각 법령 종별 입법절차

법령	구분		입법절차
경영체법(법률)	절차	정부제안	초안 작성-부처 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결재-국회 의안과 접수-국회 상임위 회부-전문위원 검토-소위 회부-상임위 의결-법사위 회부-전문위원 검토-소위 회부-법사위 의결-본회의 회부-본회의 의결-정부이송-국무회의 공포의결-공포(관보 게재)
		의원제안	초안 작성-발의 국회의원 섭외-국회 의안과 접수-이하 정부제안과 동일
	유의사항		※ 입법예고는 단축 가능하나 이 사안의 경우 단축사유 없음 ※ 규제심사는 이 사안의 경우 규제신설이 없지만 의례적으로 규제심사를 받아야 함.
경영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절차		초안 작성-부처 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결재-공포(관보 게재)
	유의사항		※ 입법예고는 단축 가능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단축사유 없음/규제심사는 생략 가능하거나 형식적 심사
경영체법 시행규칙(부령)	절차		초안 작성-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공포(관보 게재)
	유의사항		※ 입법예고는 단축 가능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단축사유 없음/규제심사는 생략 가능하거나 형식적 심사
농업인번호 등 식별번호의 체계 및 부여 등에 관한 고시	절차		초안 작성-규제심사-발령-법제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유의사항		※ 규제심사는 생략 가능 또는 형식적 심사/발령 즉시 발효

자료: 필자 작성

3.3.3. 입법추진 로드맵

○ 법률 및 시행령의 소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5-1과 같음. 또한, 표 5-6에 각 법령별 구체적인 입법절차 및 입법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그림 5-1. 법률 및 시행령 소요 기간

자료: 필자 작성

표 5-6. 입법추진 로드맵

법령	경영체법(법률)	
	정부제안의 경우	의원제안의 경우
입법 절차	초안 작성(완료)-부처 협의(2주-1개월)-입법예고(40일)-규제심사(통상 6주 정도)-법제처 심사(3주)-차관회의(1주)-국무회의(1주)-대통령 결재(1주)-국회 의안과 접수(1일)-국회 상임위 회부(여야 협의 등 국회 일정에 따름)-전문위원 검토(2주 : 주무부처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시 단축 가능)-소위 회부(국회 일정)-상임위 의결(국회 일정)-법사위 회부(국회 일정)-전문위원 검토(통상 1주)-소위 회부(국회 일정)-법사위 의결(국회 일정)-본회의 회부(국회 일정)-본회의 의결(국회 일정)-정부 이송(통상 1주 : 의안과 최종 자구 검토기간)-국무회의 공포 의결(1주-2주)-공포(관보 게재)	초안 작성(완료)-발의 국회의원 섭외(1주)-국회 의안과 접수(1일)-이하 정부제안과 동일

법률 공포 후 일정시작

법률 공포 후 시행령과 동시추진 가능

법령	경영체법 시행령(대통령령)	경영체법 시행규칙(부령)
입법 절차	초안 작성(완료)-부처 협의(2주-1개월)-입법예고(40일)-규제심사(통상 6주이지만 형식적 심사시 1주 정도로 단축 가능)-법제처 심사(3주)-차관회의(1주)-국무회의(1주)-대통령 결재(1주)-공포(관보 게재)	초안 작성(완료)-입법예고(40일)-규제심사(통상 6주이지만 형식적 심사시 1주 정도로 단축 가능)-법제처 심사(3주)-공포(관보 게재)
유의 사항	※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경영체법 부칙에서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상 설정해야 함	※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있지만 동시 추진 가능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 시행일 이전에 공포시행 되어야 함.	

법령	농업인번호 등 식별번호의 체계 및 부여 등에 관한 고시
입법 절차	초안 작성(완료)-규제심사-(통상 6주이지만 형식적 심사 시 1주 정도로 단축 가능)-발령-법제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유의 사항	※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제정된 후 고시를 발령하게 되나 고시발령을 위한 규제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여 시행령과 동시에 규제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함. ※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발령이 이루어져야 함.

자료: 필자 작성

제6장

요약 및 결론

○ 200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매년 신규 경영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총 169만 9,048개 경영체가 등록한 상태이며, 지자체 및 농업관련 기관 등에서 농업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 한편, 농업경영체 제도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직불제가 2020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향후 실경작자 파악 및 개인단위 이력 추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농업인번호 도입의 필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번호의 도입도 함께 고려함.

○ 새로운 번호체계 도입 검토를 위해 제3장에서 식별번호가 가져야 할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고자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분류에 적용되는 UCI(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과 이에 기반이 되는 인터넷 식별자 URN의 필요 특성을 정리함.

- 식별자인 URN은 유일성 · 영속성 · 확장성 · 융통성 · 규모성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UCI는 포괄성 · 유일성 · 변환성 · 상호운용성 등 총 9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번호체계 모델 시안 고려 시 위 특성 중 영속성 등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에 적용되어야 하는 특성을 적용하고자 하였음.

○ 또한, 식별번호 생성방식을 식별번호 분해 가능 수준에 따라 (1) 완전히 분해 가능한 식별번호, (2) 부분적으로 분해 가능한 식별번호, 그리고 (3) 분해 불가능한 식별번호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음.

- 완전분해가능 식별번호(유형 1)는 각 자리에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식별체계를 의미함.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체계에 해당하는 식별번호는 농장식별번호 등이 있음.
- 부분분해가능 식별번호(유형 2)는 각 자리에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제번호 역시 부여된 식별체계를 의미함. 현재 농업분야에서 이러한 체계에 해당하는 식별

번호는 확인된바 없으나 그 외 분야로, 폴란드의 개인 고유식별번호인 PESEL이 있음.

- 분해 불가능한 식별번호는 어떤 자리에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제번호는 부여된 식별번호 체계임. 대표적인 예로는 폴란드의 농업경영체번호인 UIGR(Unique Agricultural Holding Identifier)을 들 수 있음.

○ 제4장에서 실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부여체계(안)을 제시함. 현재 내부 관리번호로 농업인번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번호 체계의 영속성 및 가독성이 낮음. 또한 현행 농업경영체 번호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번호에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번호체계를 총 3가지 시안으로 제안함.

- 제1시안은 농업 관련 농업인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경영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고유번호를 분리하여 부여하는 방식임. 이에 파생된 1-1시안은 농업경영체 및 법인 고유번호 내에 소속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임.
- 제2시안은 고유번호 뒤에 여러 특성화 정보를 수록하여 고유번호-특성화번호 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임.
- 이후 전문가 집단 토론을 통해 위 시안을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의 특성을 부여하여 고유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번호체계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여 등록년도, 경영체법인여부, 농업인지위,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를 반영하되 단순화시킨 제3시안을 제시함.

○ 농업경영체번호 체계의 현상태 유지 방안을 포함한 여러 모델의 조합을 검토한 결과, 세가지 방안이 도출되었음.

- 첫째, 농업경영체번호는 현행 유지하되 농업인번호는 제3시안으로 추진하는 방향, 둘째,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모두 제3시안으로 도입하는 방향, 셋째,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모두 제1시안으로 도입하는 방향임.

○ 제5장에서는 향후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의 검토를 통해 농업경영체 번호체계 변경 및 농업인번호 도입을 시행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실제 입법방향 및 고시안을 마련하고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한편, 농업경영체번호의 경우 현재 오랜 기간 여러 기관에서 전산화되어 활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번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행정비용 지출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농업경영체번호는 현재 대외적으로 다수의 기관과 연계되어있으며, 많은 보조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직접비용(단순 번호 교체비용)[68]은 약 6,000만 원으

로 액수가 많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보조사업 DB의 번호 수정비용, 대외연계기관에서의 교체비용과 기존 정보와의 연계성 문제 등 유무형의 파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실무담당자 역시 농업경영체번호의 변경은 어려우며 당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번호는 현행 유지하되 농업인번호는 제3시안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함.

- 농업인번호 도입과 함께 현행 농업경영체번호를 바꾸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번호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음.
- 대안적인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번호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향후 농업인번호가 시행된 이후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농업경영체 번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다만,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농업인번호를 수정 보완하는 것은 비교적 제약이 적고, 인력, 장비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모의 운용 등을 진행하여 추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됨.

○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새로운 식별번호 체계의 도입에 관련된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농업(인)과 관련된 내외적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번호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임.

-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농정은 맞춤형 농정이 시행하고, 2020년에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등 농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민 및 농업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주민등록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등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농업경영체 본격적인 도입 안을 마련하는데 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되었으며, 시행 이후 본격화까지 제도적·법률적 애로사항이 존재하였으며, 현재에도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 둘째, 향후 농업인번호 도입의 추진은 법률적, 정책적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농업인과의 소통하는 등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를 통하여 농업경영체 제도의 법률적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음. 추후 농업인번호 도입은 현제도 시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농정 방향 등 변화하는 여건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식별번호체계의 형태와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중요 사용자 가운데 하나인 농업인의 의견을 확인·수렴하

68) 번호교체에 필요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부표 5에 첨부함.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 본 제도의 실행은 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안 중에서 농업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문헌

<문헌>

김수석. 2013.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윤호 외. 2014.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통합저작권 관리번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간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김종진 외. 2019.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외. 2015.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김평수. 2011. [미래인터넷] URN(Uniform Resource Name) 표준 규격 업데이트 현황

서홍석 외. 2017. 쇠고기이력제를 활용한 축산관측 고도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병일. 2014. EU CAP 직불제 개혁의 주요 내용.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한석호 외. 201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DB 분석 및 활용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석호 외. 2017. 농업경영체 DB 활용 성과 및 시사점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석호 외. 2019. 농업경영체 DB의 외부연계를 통한 품질제고 및 외부활용을 위한 사례별 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03.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2014. 돼지고기 이력제 본 사업 대비 현장점검 매뉴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Construction of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경영체의 영농활용기술 도입요인 및 경영성과 분석

전해숙·강상경. 2012.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보건사회연구 , Vol.32, No.1, pp.28-57

European Commission. 2015. The concept of the Unique Agricultural Holding Identifier (UIGR)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 자료>
강원도민일보. 2009.09.22. 맞춤형 농업경영체 '호응'
김동옥. 2004. 축산업 등록제 헛바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신청서
농민신문. 2009.03.06.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시큰둥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2019.11.02. 新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부여체계(안)
제주신보. 2009.06.05. 농림사업 지원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제주의 소리. 2009.06.10. "향후 불이익 없도록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뉴시스. 2209.06.25. 거제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세요". 뉴시스. 2009.08.05. "농민도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불이익없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7.03.20. '농가등록제' 시행…전업농·중소농 지원 집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8.05.28. 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02.02.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 2월부터 본격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6.23. 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정진형. 2015. 한우농가, "농장식별번호 발급받아야". (한우자조금소식지)
황형주. 2004. 강원낙농인연합회 낙농회생 대책마련 결의대회.
<참고 사이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통계) <https://www.kopico.go.kr/main/main.do>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 <https://www.mafra.go.kr/young/954/subview.d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s://uni.agrix.go.kr/>
정부24(행정전문용어사전) <https://www.gov.kr/main?a=AA170WHDicAppNew>
UCI 홈페이지(UCI 특징) <https://www.uci.or.kr/intro_02.do>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침해건수 상담건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66&board_cd=INDX_001>
PRACTICAL LAW UK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0-518-940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부록 1: 부표

부표 1. 연차별 농업인번호 도입 대상 지원사업 목록(2017년 9월 5일 기준)

도입 연도	순번	사업명(단위시스템명)	개인정보 보유건 수
2017	1	통합경영체관리	2,160,373
	2	통합지원사업관리(쌀)	1,213,485
	3	통합지원사업관리(밭)	842,805
	4	통합지원사업관리(조건불리)	293,382
2018	1	경영이양직불제	58,599
	2	경관보전직불제	17,821
	3	친환경농업직불제	3,537
	4	친환경축산직불제	19,468
	5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132,581
	6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273,596
	7	면세유사후관리	1,811,318
2019	1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230,526
	2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82,020
	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5,092
	4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9,907,285
	5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5,202
	6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1,4513
	7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2161
	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목재펠릿/에너지절감)	10,349
	9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83
	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0
	11	산지유통종합평가	1,645
	12	산지유통시설관리	126
	13	농산물물류표준화	9,926
	14	인삼경작신고	14,571
	15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19,570
2020	1	가축분뇨자원화관리	282,421
	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1,283
	3	농지매매(매입·매도)	102,345
	4	농지장기임대차	86,814
	5	농지교환 또는 분리.합병	9,753
	6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7,477
	7	농지매입·비축	4,991
	8	과원매매	5,200
	9	과원임대차	1,653
	10	시설원예 현대화	460

	11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614
	12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지원	624
	13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사업	-
	14	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	5
	15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aT)	12
	16	정례직거래장터, 직매장 지원	14
	17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26
	18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25
	19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사업	
	20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65
	21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84
	22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149
	23	외식업체육성 지원 사업	18
2021	1	농작물재해보험	248,492
	2	가축재해보험	23,825
	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461,635
	4	농업재해대책사업	15,137
	5	농기계종합보험(통합사업)	264,604
	6	첨단온실신축지원	93
	7	농축산경영자금 지원-농업경영자금	223,931
	8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축산경영자금	8,177
	9	농축산경영자금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5,599
	10	농업종합자금 지원-원예/축산/가공사업	38,028
	11	농업종합자금 지원-관광농원/농촌민박	66
	12	농업종합자금 지원-농기계구입/관리	120,307
	13	농업종합자금 지원-꿀/녹용가공산업	19
	14	농업종합자금 지원-쌀가공산업육성	139
	15	농업종합자금 지원-우수기술사업화	163
	16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321
	17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9,457
	18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461
	19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	1,208
	20	6차산업자금지원	42
	21	긴급경영안정자금	106
	22	재해복구융자금	858
	23	농가사료구매자금사업	29,036
	24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3,901

부표 2. 법인등록번호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9. 11. 6.>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별	번호	등기관서별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101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846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103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847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401	의정부방법원 파주등기소	2849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5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850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60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201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7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21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802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124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84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245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8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31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84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312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8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313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8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314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341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342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343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34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345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34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348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349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354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546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1355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135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601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135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61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35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612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35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613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4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6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4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6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412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6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413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64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414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643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441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644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442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645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443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646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444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647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445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446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447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448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449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450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451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45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50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5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5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513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541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542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543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544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545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749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1750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1751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752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754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755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756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757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758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75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760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8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8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84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841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1843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844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847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85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30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341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1648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649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650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651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65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70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7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7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7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7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7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7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7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718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743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744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745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747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748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45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46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47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48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49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50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51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52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53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5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55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43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44
광주지방법원 구례등기소	2045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2046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2047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42	광주지방법원 고흥등기소	20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15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205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11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5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12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5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13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5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14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55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41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56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43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57
창원지방법원 삼천포등기소	1944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58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59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60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61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	2062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1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1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1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113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141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142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143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144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145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146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147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148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149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201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241		

부표 3. 법인등록번호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6. 8. 1.>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상법법인	상법	주식회사	11
		합명회사	12
		합자회사	13
		유한회사	14
		유한책임회사	15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21
		재단법인	22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3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32
	의료법	의료법인	33
	공인회계사법	회계법인	34
	한국은행법등	특별법에 의한 은행	35
	농업협동조합법	단위농업협동조합	36
		특수농업협동조합(양잠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37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	38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협동조합	
		어촌계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중앙회	39
		산림조합	
		산림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중소기업협동조합	40
		업종별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41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	4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업진흥공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43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마을금고)	44
		새마을금고연합회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	45
		(직장별, 지역별, 직종별)	
	변호사법	법무법인	46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	47
		대한상공회의소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	48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보증기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송사업조합	49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업협동조합법	단위공업협동조합	50
		특수공업협동조합	
		공업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51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국법자문사법	합작법무법인	52
	법무사법	법무사법인	53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71
외국법인		주식회사	81
		합명회사	82
		합자회사	83
		유한회사	84
		유한책임회사	86
		기타	85

부표 4.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교체비용 산출

분야/비목		내역	금액(원)	비고
용역비	직접 인건비	○ 중급기술자(농업경영체 발급시스템 개발, 개별 지원사업 기능 개선 제외) - 239,748원(평균임금) * 20.8일(월평균 근무일수) * 2명 * 3개월 = 29,920,550원	29,920,550	
	간접비	미적용	-	
	제경비	○ 직접인건비(29,920,550원) * 80% = 23,936,440원	23,936,440	
	기술료	미적용	-	
용역비 소계		○ 직접인건비(29,920,550) + 간접비(0원) + 제경비(23,936,440원) + 기술료(0원) = 53,856,990원	53,856,990	
부가세		○ 개발비 소계(53,856,990원) * 10% = 5,385,699원	5,385,699	
합계		○ 용역비 소계(53,856,990원) + 부가세(5,385,699원) = 59,242,689원	59,242,689	

부록 2: 법률

부록 1. 헌법상 법률로 규정할 것을 정한 조문 예시 (총강 및 기본권)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록 2. 우리나라 등록번호 입법례 및 번호부여 체계

가. 주민등록번호

○ 법령 및 시행령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번호 구성

OOOOOO-OXXOOXO : 생년월일(연도는 2자리만)-성별(1 : 남자, 2 : 여자, 3 : 2001년 이후 출생 남자, 4 : 2001년 이후 출생 여자)/지역/출생등록지(출생신고한 읍면동의 고유번호)/당일 출생신고 접수순서/위조방지 특수번호(오류검증번호)

성별 표시

9 : 1801-1900년에 태어난 남성

0 : 1801-1900년에 태어난 여성

5 : 1901-2000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6 : 1901-2000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7 : 2001-2100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8 : 2001-2100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 2020.10 이후 새로운 번호체계 적용 예정/기존 번호는 유지 : 뒷자리 7자리는 임의번호 부여

-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카드결제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고유식별정보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되고 있어 번호도용이 우려되는데, 현행 번호부여체계를 알게 되면 특정인의 번호를 유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의번호로 대체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된 번호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시행령 제12조의2) : 새로운 번호체계로 개편하는 것과 별도로 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뒷자리 7자리는 임의번호를 부여

-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나. 여권번호

○ 법령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3. 삭제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여권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여권기재사항에서 삭제(시행일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미정)

○ 번호 부여방법

구성 : 한자리의 알파벳+8자리 숫자
여권번호의 숫자는 접수되는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변조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부여되고 있어 본인이 원하는 특별한 숫자를 지정해서 발급받을 수 없음
☆ 여권 번호에 나오는 알파벳 의미
- M: Multiple의 약자로 유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
- S: Single의 약자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한국을 기준으로 출입국을 한 번 할 수 있음)
- R: Resident의 약자로 거주여권
- G: Government의 약자로 관용여권
- D: Diplomatic의 약자로 외교관 여권
- TC: Travel Certificate의 약자이며 여행 증명서
※ 2008년 8월 이전에 발급된 여권 중에서는 두 개의 알파벳과 일곱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여권에 전자 칩이 들어가지 않은 사진 전사식 여권임 (KN1234567 : 'KN' 발행구청의 영문 약자('KN' 강남구청))
2. 종류: 대부분의 여권 종류는 알파벳 P(Passport)와 위에서 이야기한 알파벳이 합쳐진 조합으로 구성 됨.
- PM: 복수, PS: 단수, PR: 거주, PO: 관용, PD: 외교관, PT: 여행 증명서

다. 운전면허 번호

○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각목 생략]
2. 제2종 운전면허 [각목 생략]
3. 연습운전면허 [각목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 번호 구성

OO-OO-OOOOOO-OO : 지역경찰청 번호-발급연도-임의부여

라. 외국인 등록번호

○ 출입국관리법 법령 및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별 · 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번호 구성

○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체계 - OOOOOO-OXXOOXO :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일련번호/등록자 구분번호/오류검증번호 1. 앞자리 1~6자리 숫자는 태어난 생년월일 2. 뒷자리 1자리 숫자는 출생세기와 성별 5 : 1900년대 태어난 남자 6 : 1900년대 태어난 여자 7 : 2000년대 태어난 남자 8 : 2000년대 태어난 여자 3. 뒷자리 2~3자리 숫자는 등록기관 4. 뒷자리 4~5자리 숫자는 일련번호 5. 뒷자리 6자리 숫자는 등록자구분번호 7 : 외국국적동포

8 : 재외국민
9 : 외국인
6. 뒷자리 7자리 숫자는 오류검증번호

○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없을 경우
- 조합주민번호(실명번호)
- OOOOOO-OXOOOOO : 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 마지막 5자리 숫자
1. 앞자리 1~6자리가 태어난 생년월일
2. 뒷자리 1자리 숫자는 성별
7 : 남자
8 : 여자
3. 뒷자리 2자리 숫자는 국적구분
1 : 미국
2 : 일본
3 : 중국
4 : 기타
4. 뒷자리 3~7자리 숫자는 여권번호(기타 외국인)의 마지막 5자리 숫자
- 여권번호 예) : J 0 2 4 6 8 9 0
- 첫번째 자리가 국적(A : 미국, J : 일본, E : 기타)을 의미함

마. 사업자등록번호

○법령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번호 구성

○ 10자리(AAA-BB-CCCCD)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4 부분으로 구성

1. 일련번호 코드(3자리 : AAA)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만, 2015.2.23. 이전 사업자등록번호 앞 3자리 일련번호는 청서코드(3자리 중 첫 자리는 각 시도별 지방국세청번호, 그 다음 2자리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번호)

2. 개인 법인 구분 코드(2자리 : BB)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 성격 코드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AAA-BB-CCCCD)
국내법인	영리법인	81, 85(지점), 86-88
	비영리법인	8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83
외국법인		84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01-79
	면세사업자	90-99
기타	법인 아닌 종교단체	89
	다단계판매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80

3. 일련번호 코드(4자리 : CCCC)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사용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4. 검증번호(1자리 : D)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 부여

바.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 · 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01-69로 한다. [표 생략]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제6조(관할관청 기호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표 생략]

부록 3.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항의 시행일 : 2020. 8. 5.]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69]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제2호의 시행일 : 2020. 8. 5.]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항의 시행일 : 2020. 8. 5.]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호의 시행일 : 2020. 8.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 ·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단서의 시행일 : 2020. 8. 5.]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삭제 : 2020. 8. 5.시행]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항의 시행일 : 2020. 8. 5.]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9)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록 3. 주민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사항은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음 : 내부 지침으로 운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별 · 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할 사항은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음 : 내부 지침으로 운영

부록 4. 경영체법상 관련 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 · 축사 · 임야 ·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 · 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 농장 ·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 · 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어업 면허 · 허가 · 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 · 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 · 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어업 면허 · 허가 · 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 · 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별표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라.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나.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나. 용도
   다. 종별 사육규모
7. 다음 각 목의 임야[「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林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나.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
5. 삭제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 · 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 · 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이하 생략]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 · 면장 · 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 · 면장 · 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 · 면장 ·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 · 가공할 수 있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다목 · 라목,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

경등록신청서를 읍장 · 면장 · 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 · 면장 · 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